

2020 근대한국국제관계사 기획연구 학술회의

한국근현대 국제관계사 연구와 자료조사

-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18: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2020 근대한국국제관계사 기획연구 학술회의 프로그램

-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18: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 주 제 : 한국의 근현대국제관계사 연구와 자료조사 현황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개 회 식
	■ 제1부 발표 (사회: 남상구 소장)
14:10~14:40	발표 1 : 신희석 (연세대학교)
	- 한일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한국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논의 : 조약법, 무력 위협 또는 사용, 식민지 지배의 관점에서
14:40~15:10	발표 2 : 신동혁 (한국외국어대)
	- 러시아 국립아카이브 소재 일제강점기 한국관련 자료조사 현황
15:10~15:20	휴식
	■ 제2부 발표 (사회: 이종국 연구위원)
15:20~15:50	발표 3 :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9) : 러시아국립역사문서관(RGIA)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15:50~16:20	발표 4 : 민경현 (고려대학교)
	- 한국전쟁 관련 국내기관 소장 자료 조사 현황
16:20~16:40	휴식
	■ 종합토론 사회: 박환(수원대 교수, 전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16:40~18:00	서종진(재단 연구위원), 신호승(재단 연구위원), 홍응호(성균관대학교), 오병수(재단 연구위원), 발표자 및 참석자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근현대국제관계사연구와 자료조사』

<차 례>

1. 신희석 : 한일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한국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논의 - 조약법, 무력 위협 또는 사용, 식민지 지배의 관점에서 ... 1
2. 신동혁 : 러시아 국립아카이브 소재 일제강점기 한국관련 자료조사 현황 .. 17
3. 최덕규 :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 러시아국립역사도서관(RGIA)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37
4. 민경현 : 한국전쟁 관련 국내기관 소장 자료 조사 현황 65

한일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한국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논의
: 조약법, 무력 위협 또는
사용, 식민지 지배의 관점에서

- 신희석 (연세대학교)

한일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논의:
조약법, 무력 위협 또는 사용, 식민지 지배의 관점에서

I. 서론

II. 국제법 변천의 맥락에서 본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성 논의

III. 한국 주권 박탈 조약의 불법성 주장

IV.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주장

V. 결론

I. 서론

오늘날 21세기 초에 일본의 한국 병합과 같은 주권 박탈은 상상하기 어렵다.¹⁾ 1945년 유엔헌장 채택 이후 타국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나 정치적 독립(political independence)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threat or use of force)는 금지되었다(제2조 제4항). 이는 기본적으로 1945년 이후 무력 위협과 행사가 타국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유엔 안보리의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enforcement measures)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에서 비롯된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다면 이는 오늘날의 국제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그 당시의 국제법을 준거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시제법(inter-temporal law)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²⁾ 과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징기스 칸의 정복 행위가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광개토대왕과 세종 대왕의 정복사업,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과 흥 타이지의 병자호란을 오늘날 시각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소급 적용 금지가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관점에서도 당대 국가들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보편적 법리가 없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당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예법에 따른 사대교린 체제가 존재하였지만 19세기 이후 근대 법과학 이론에 따라 정립된

1)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병합, 지난 7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매우 예외적인 사태라 할 수 있다.

2) 물론 과거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시제법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동준,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 『아세아연구』 제54권 4호(2011년), p. 163; 도시환,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60호(2015), pp. 140-142.

국제법과 같은 규범성을 가지고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³⁾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양국간에는 현격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1951년 시작된 한일회담이 1965년 기본조약 등의 체결까지 오래 걸린 주요 원인이었고,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의 한국 병합 합법 체결 발언에 한국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고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소위 ‘한일 구조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 확인한 것이 을사조약 등의 원천 무효를 의미함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⁴⁾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이러한 공식 견해를 바꾼 적이 없다.

물론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8월 일본의 패전 50주년을 맞아 내각 동의를 거쳐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낸 바 있다. 또한 2010년 한일 병합 10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뜻에 반한 것임을 확인하는 간 담화를 냈다. 특히 2010년 간 담화는 1953년 구보타 발언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일본 국회 비준 동의 당시 발언들에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불법성(illegality)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성(illegitimacy)은 인정한 의미가 크다. 2012년 12월 자민당 재집권 이후에도 아베 정권은 간 담화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며, 현 스가 정권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남은 과제는 일본 정부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성까지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주로 조약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⁵⁾ 직후부터 국제법 학계에서 조약의 불법성이 지적되었고, 광복 이후 한일 회담에서도 을사보호조약 등 ‘한일 구조약’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과거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소위 ‘구조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타협 문구가 삽입된 데서도 알 수 있다.⁶⁾

3)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권 박탈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 조약 발효,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 ‘체결’,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한 일본군의 한성 점령 등을 시작 시점으로 들 수 있다.

4) [141195] 대한제국과일본제국간의특약에대한일본의정확한역사인식을촉구하는결의안(대안)(통일외무위원장), 1995. 10. 14 제안, 1995. 10. 16 의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3300>

5) 주지하다시피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여러 중대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당시 대한제국의 국가원수였던 고종 황제가 ‘늑약’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체결’이라 따옴표에 넣어 표현하였다.

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일 1965. 12. 18] [일본, 제163호, 1965. 12. 18], <https://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58>

사실 을사보호조약의 적법성을 놓고는 ‘체결’ 이듬해에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논문이 출판되어 한일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이 일본을 상대로 한일 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한편, 1930년 미국 국제법학자 제임스 가너 교수가 기초하여 국제연맹의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를 거쳐 1963년 영국 국제법학자 험프리 왈독이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에서 기초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에까지 반영되었다. 게다가 최근 학계에서도 일본의 한국 병합 불법론은 법적 측면에서 주로 조약법 위반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⁷⁾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일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논의가 갖는 의미를 국제법 변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논의가 조약법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무력 위협 및 사용의 불법화, 식민지 지배의 불법화 차원에서도 제기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려 한다. 물론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이런 대안적 근거들은 조약법에 근거한 주장과 상충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이 일제 지배의 부당성(illegitimacy)을 불법성(illegality)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논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 국제법 변천의 맥락에서 본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성 논의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주권 박탈 당시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 이미 편입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내항 이후 서양 열강들과 개항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십 년간 식민지화 위기감에 메이지 정변 등을 겪으면서 중앙집권화, 사민평등, 산업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세 자주권 회복과 영사 재판권 폐지를 위하여 서구 국제법 이론을 수용하고 국제법에 입각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 측면에서도 현대 헌법전과 민형법전을 도입하는 등 서구 법체계의 전면적 수용이 이루어졌다. 조선 또한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기존의 유교적 사대교린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청일전쟁과 3국 간섭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어 청국과도 국제법 질서에 입각한 조약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국제법 질서도 20세기 전반 큰 변화를 겪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

7) 아래 제III장 참조.

후 체결된 1928년 파리(켈로그-브리앙) 부전조약과 1945년 유엔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 위협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근세 서유럽과 중남미에서 시작된 민족국가 수립 운동은 인민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원칙으로 식민지에도 전파되었으며, 유엔헌장에 규정된 인민의 자결원칙에 따라 1960년대에 이르면 기존에 서구열강 제국의 치하에 있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이 독립하여 현대적 주권국가로 재편되었다. 한편, 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들을 규율하는 조약법은 1930년에 법전화가 시도되었으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도 조약의 무효 사유로 명시함과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도 조약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였다.

일본의 한국 주권 박탈은 이러한 국제법의 일대 전환기에 발생하였다. 이렇듯 경계적 시점에 발생하는 주권 박탈은 어느 국제 규범을 적용할 지가 문제가 된다.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나치 수뇌들에게 ‘평화에 반한 죄(crimes against peace)’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928년 파리 부전조약으로 침략행위는 국제 범죄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병합 당시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승인하였고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죄형법정주의는 정의의 원칙이며, 조약 등의 위반을 알면서도 주변국을 공격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⁸⁾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도 일제 지도자들에 대해 뉘른베르크 법리를 적용하여 ‘평화에 반한 죄’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1928년 파리 부전조약 이후로 무력 사용은 불법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전후 평화조약에서도 특히 1947년 파리에서 체결된 對이탈리아 평화조약은 前文에서 이탈리아가 연합국을 상대로 침략전쟁(war of aggression)에 착수하였다고 명시하였다.⁹⁾ 對이탈리아 평화조약은 에티오피아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8) 판결문 원문: "In the first place, it is to be observed that the maxim nullum crimen sine lege is not a limitation of sovereignty, but is in general a principle of justice. To assert that it is unjust to punish those who in defiance of treaties and assurances have attacked neighbouring states without warning is obviously untrue, for in such circumstances the attacker must know that he is doing wrong, and so far from it being unjust to punish him, it would be unjust if his wrong were allowed to go unpunished."

9) "Whereas Italy under the Fascist regime became a party to the Tripartite Pact with Germany and Japan, undertook a war of aggression and thereby provoked a state of war with all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nd with other United Nations, and bears her share of responsibility for the war: ..."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m-ust00004-0311.pdf>

명시하여 이탈리아가 1935년 에티오피아 침공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음을 확인하였는데, 역시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병합을 승인한 상태였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서 과거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소위 ‘구조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 확인하는 타협이 성립한 것도 이러한 현대 국제법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 한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면 에티오피아와 마찬가지로 평화조약에 한일 구조약의 원천 무효 등을 명시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¹¹⁾

법적 차원에서 주권 박탈의 불법성 논의는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한 3차 분할로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되찾은 폴란드가 123년간의 외세 통치를 불법으로 규정하려 했던 것이 최초로 여겨진다.¹²⁾ 1773년 9월 30일 폴란드 의회가 러시아군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에서 비준한 영토 분할조약은 1930년 미국 국제법학자 제임스 가너 교수가 기초하여 국제연맹의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무효인 조약의 사례로 언급되었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도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알제리는 1830년부터 잔혹한 독립전쟁(1954년-1962년)이 끝날 때까지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에 의한 알제리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를 반인도범죄(crime contre l'humanité)라 불렀고, 올 7월에도 독립 투사 유해를 송환하며 부당성을 인정하였지만 프랑스 국내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공식 사과조차 피하고 있다.¹³⁾ 물론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태도는 무라야마 담화와 간 담화로 공식화된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사죄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프랑스 이외의 옛 식민지 종주국들도 여전히 문명 개화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에스토니아의 국제법 학자인 라우리 맬크수(Lauri Mälksoo) 교수는 ‘불의로부터 법은 생성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 the law does

1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일 1965. 12. 18] [일본, 제163호, 1965. 12. 18], <https://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58>

11) 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평화회담에 폴란드가 참여했던 전례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참여를 요구하여,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고 일본도 조속한 평화조약 체결과 주권 회복을 위해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으나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았던 영국의 반대로 한국은 읍저버 자격으로 평화회담을 참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12) 당시 폴란드 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국제법학자들도 국제법에 입각하여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 자료 연구가 필요하다.

13) 김용래, “파리박물관에 있던 알제리독립투사 24인 유해, 160년만에 고국행”, 연합뉴스 2020. 7. 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00500081>; 윤다혜, “알제리 대통령 “佛정부, '식민지배' 공식 사과해야””, 뉴스1 2020. 7. 5., <https://www.news1.kr/articles/?3986514>

not arise from injustice)’와 ‘법은 사실로부터 생성된다(*Ex factis jus oritur*; the law arises from the facts)’는 두 법 원칙의 충돌을 논하면서 1928년 파리 부전 조약을 근거로 1939년 이후 당시 소련의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라투아니아) 점령과 병합이 당시 국제법 위반이었으며, 이러한 불법성 주장이 결국 1991년 발트해 3국의 주권 회복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설파한 바 있다.¹⁴⁾ 실제로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징적이지만 소련에 의한 발트해 3국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¹⁵⁾

이렇듯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성 확인은 동 행위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1900년대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한반도 통치가 기정 사실화되었지만 그 부당성을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불법화로 확인 받고 싶었던 것이다. 김동조 당시 외무부 정무국장은 회고록에서 “우리가 한일합병조약의 무효확인을 기본조약에 굳이 명문화하려는 것은 실리(實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국민적 자존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합방’이라는 민족적 수모를 겪기는 했지만 이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마당에서 문서상로나마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씻어 버려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¹⁶⁾ 을사 보호조약, 병합조약 등 한일 구조약의 무효 확인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존심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 불법성의 확인은 법적 근거, 특히 일본의 한국 병합과 식민지 지배 자체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더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즉, 한일 구조약의 불법 확인을 통하여 일본에 의한 한반도 통치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對이탈리아 평화조약의 경우처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력 사용 자체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자체도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논리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4) Lauri Mälksoo,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 A Study of the Tension Between Normativity and Power in International Law*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15) 흥미롭게도 1990년 9월 한국은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발트해 3국의 법적 지위에 대해 침묵했다.

16) 김동조, 회상30년 한일회담(서울: 중앙일보사, 1986), 이동준,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 『아세아연구』 제54권 4호(2011년), p. 156에서 재인용. 물론 일본을 비롯한 역사상의 침략국, 식민지 종주국들이 주권 박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꺼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 자존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17) 물론 도츠카 변호사 등은 한일 구조약의 무효 확인이 일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 안중근 재판의 법적 근거 비판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일찍부터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사실이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이 이와 무관하게,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부당성, 불법성을 확인받으려 하던 것도 사실이다.

III. 한국 주권 박탈 조약의 불법성 주장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본의 한국 병합 불법은 주로 조약법 위반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906년 프랑스 국제법 학자 프랑시스 레이는 “한국의 국제적 상황(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ée)”라는 논문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국가 대표들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되었고, 일본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1902년 영일 동맹조약, 1904년 한일 의정서 등 기존 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했던 규정과 상충된다는 두 가지 이유로 무효라 주장하였다. 한편, 1910년 또 다른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빼랑자케 또한 한일 병합 직후 쓴 “한국과 일본(Corée et Japon)”이라는 논문에서 전쟁 종료 후 강요된 평화조약은 유효하지만 국가대표들에게 억압이 가해진 조약은 무효라는 논리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 주장하였다.¹⁸⁾ 한편, 당시 일본 국제법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는 ‘외교시보(外交時報)’에 게재된 논문 “일한협약과 강박 문제(日韓協約と強迫問題)” 및 저서 ‘보호국론(保護國論)’에서 강제는 조약 체결의 본질적 요소로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가 대표에 대한 심적 강제가 아닌 신체적 강제만이 무효 사유라 반박하였다.

1950년 10월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¹⁹⁾는 레이 교수와 아리가 교수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을 들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²⁰⁾ 레이 교수의 논문은 1930년 미국 국제법학자 제임스 가너 교수가 국제연맹의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에 인용이 되어 을사보호조약은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을 이유로 한 조약 무효 사례로 인용되었다. 그리고 1963년 영국 국제법학자 험프리 왈독이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에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는 다시 가너 교수의 보고서의 사례들을 인용하였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1993년 2월 국제 NGO인 IFOR을 통하여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한제국 대표자에 대한 강박을 근거로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하였다(E/CN.4/1993/NGO/36, 17 February 1993).²¹⁾

한편, 국내에서는 1995년 사학자인 이태진 교수가 한일 구조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글들을 게재하였으며²²⁾, 1996년 『한국사 시민강좌』에는 이태진 교수

18) 두 논문의 국문 번역본과 해설은 정일영, 한국 외교와 국제법(파주 : 나남, 2011), pp. 117-189.

19)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01_0010_0010

20) 이동준,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 『아세아연구』 제54권 4호(2011년), pp. 160-163.

21) <https://undocs.org/E/CN.4/1993/NGO/36>

22)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서울: 까치, 1995).

와 국제법학자인 백충현 교수가 각각 한일 구조약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²³⁾ 이 중 이태진 교수의 글은 1998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세카이』지에 실렸고 사카모토 교수, 운노 교수와 반박문, 재반박문이 게재되었다.

조약 무효론은 크게 보면 첫째로는 조약 체결자인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체결, 둘째로는 조약문 원본 부존재와 비준 절차 생략과 같은 조약의 체결 형식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⁴⁾ 물론 이러한 국제법적 접근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당시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행사에 따른 조약 체결은 합법인 반면에 국가 교섭 대표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강박은 불법이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당시에도 국가에 대한 강요에 따른 조약도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²⁵⁾ 또한, 국내 비준 절차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사카모토 교수, 운노 교수 등은 외무성 내부 지침 등을 근거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조약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시만 해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처럼 조약법을 집대성한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 있다. 결국 당시의 조약 실무에 관한 관습법은 오픈하임, 위튼 등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저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들이 실제의 법(*de lege lata*)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법(*de lege ferenda*)을 기재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저자들 간에 견해가 갈릴 수 있으며, 주로 서양 학자들인 이들의 저술에게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제국주의 재생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의 국제법학계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저술이 나온 반면에 한국은 국제법학자가 전무하였던 점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확보 과정에서 조약을 활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이러한 사례들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19세기 이후 서양은 앞선 군사기술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무력만으로 전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구 열강들의 조약을 통한 식민지 지역의 주권 박탈도 일본의 조약을 통한 한국의 주권 박탈처럼 국제법 위반이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의 조약들이 체결 대표들에 대한 강박이나 조약 체결 형식과 절차

23)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한국병합 불성립을 논함", 『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1996), pp. 21-54; 백충현,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1996), pp. 72-85.

24) 박배근,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114호(2009), pp. 92-93; 정민정,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2014), p. 100.

25) 성재호,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 제29호(2010), pp. 227-265

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 불법이었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시 국제법으로도 이러한 조약들이 불법이었음에도 피해 국가들이 독립 이후에도 국제법 위반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주장

현대 국제법에서 무력 위협과 사용 금지가 명문화된 것은 1928년 파리 부전 조약 또는 1945년 유엔 헌장 채택 이후인 것으로 통상 이해가 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주권 국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의 대두 전까지 서구 국제법 질서에는 교회법의 정전론(just war theory)의 영향이 컸다. 한편, 중립법은 법실증주의 하에서도 중립법은 널리 존중되었는데, 전시 중립국의 권리는 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중립국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교전국은 중립국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1904년 2월 일본은 對러시아 선전포고를 전후로 한국의 사전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선전 포고도 전에 인천을 통해 상륙한 병력이 한성을 장악하고, 2월 23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에 의한 한국의 중립 위반은 1904년 8월 22일 한일 협정,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 1907년 7월 24일 정미조약, 1910년 8월 22일 병합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주권 박탈의 계기가 되었다. 도츠카 변호사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한국 주권 박탈의 시작점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미 1904년 2월 중순부터 일본의 중립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점령으로 주권을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불과 10년 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신속히 프랑스를 패퇴시키기 위하여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여 종전까지 4년간 벨기에를 점령하였다. 독일 패전 후 1919년 파리 평화회담에서는 연합국은 독일의 전쟁 책임을 추궁 방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대표 각 2명씩 및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의 대표 1명씩 총 15명의 대표로 구성된 전쟁책임처벌위원회를 설치하였다.²⁶⁾ 전쟁책임처벌위원회는 독일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면서도 침략전쟁이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 했고, 중립국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침략은 조약 위반이지만 개인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판단하였다.²⁷⁾

26)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of the War and on Enforcement of Penalties: Report Presented to the Preliminary Peace Conference, March 29, 191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1920), pp. 95-154.

따라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구실로 중립국인 한국을 군사점령 하에 두고 수 년 내로 한국을 병합해버린 일본의 조치는 그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벨기에와 같이 국제조약을 통하여 중립국 지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중립국에 관한 관습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²⁸⁾ 또한, 일본이 기존에 한국과 서구 열강들과 체결한 조약들은 한국의 독립 보장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군사점령과 뒤이은 주권 박탈은 이러한 조약 의무의 위반이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법에서 식민지 지배(colonization)가 불법이 된 것은 무력 위협과 사용의 금지보다 더 후대의 현상이며, 가해국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오히려 일본의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10년 간 담화에서 처럼 식민지 지배를 침략전쟁과 묶어서 사과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 주변국의 침략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나미비아 식민지화와 헤레로족 학살 등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 근린국인 반면에 유럽의 옛 식민지 종주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대륙에 식민지를 거느렸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945년 유엔 헌장 제2조 제1항의 영문본은 ‘인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자기결정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 ‘권리’가 아닌 ‘원칙’에 불과하다. 그런데 영문본과 동일하게 유효한 불어본은 ‘인민들의 동일한 권리와 자기결정의 권리(principe de l'égalité de droits des peuples et de leur droit à disposer d'eux-mêmes [principle of equal rights of peoples an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결정’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의 불어본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모든 인민들은 자결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 차고스 제도(Chagos Archipelago)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일련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정확한 연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는 인민의 자결권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비식민지화(decolonization)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시하였다.²⁹⁾ ICJ는 서방 국가

27) Id., pp.99-112, 117-120. 대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였다.

28) 참전을 주저하던 영국 의회는 독일의 중립국 벨기에 침략이라는 국제법 위반 소식을 듣고 비로소 참전을 결정하였다.

29)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들이 자결권이 1960년대 중반보다 후에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제3세계 신생 독립국들은 자결권이 훨씬 이전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한 것의 절충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중반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자결권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41년 영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다른 연합국들이 동참한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은 모든 인민들이 자기 정부의 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식민제국이었던 영국은 대서양 헌장이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서양 헌장의 본문에는 그러한 지리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뒤이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은 “한국민의 노예화를 주지하며, 한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자유롭고 독립할 것임(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을 천명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분명한 사례이다. 실제로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등은 종전 후 수 년 사이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1940년대 초반에는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지배의 불법화 법리만으로는 1900년대 중반부터의 40여 년간 계속된 일본에 의한 주권 박탈 전체가 불법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 초반에 인민의 자결권에 따른 식민지 지배의 불법화 확인은 일본에 의한 인력, 물자, 금융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할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V. 결론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찬탈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서양의 사학자는 물론 국제법학자들도 그러한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묻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은 단순한 법적, 경제적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심리적 함의를 갖는 문제이다. 한국과 같은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에 입은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가 있다면 거꾸로 가해국 입장에서조차 과거의 군사 업적이나 제국 건설에 대한 자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

1965, <https://www.icj-cij.org/en/case/169>.

하지 않으려 하는 측면이 강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는 베르사유 대독 평화조약에서 퇴위한 빌헬름 2세와 독일 전범들의 형사 처벌보다도 배상 문제 관련 제231조의 독일 전쟁 책임(war guilt) 조항에 대해 독일 전체에 대한 천추에 길이 남을 치욕이라 간주하여 가장 극렬히 반대하였고, 이는 후일 히틀러 등 극우파가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기치로 내세워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⁰⁾ 비슷한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서독 정부는 1952년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3국과 체결한 독일 조약에서도 뉘른베르크 판결의 법적 승인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이에 수반한 3.1 독립운동의 가혹한 탄압, 전시 징병과 징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등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여론이 수용하기 더 용이할 수 있다. 영국, 네덜란드 법원과 정부는 각각 1950년대 케냐 독립전쟁과 1960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중의 학살과 고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식민지 지배와 독립 탄압 자체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 표명에도 인색한 편이다. 이는 국가의 주권 박탈과 같이 피해 주체가 추상적이고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 간주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지만 구체적 개인 피해자가 있는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가해국에서도 여론이 더 민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잔학행위의 경우, 유대인 학살, 한센인 격리와 단종수술 사례처럼 피해자들의 국적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국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거 일본에 의한 주권 박탈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받고 싶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ICJ는 분쟁 당사국들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기업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한일 과거사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ICJ에 회부한다면 일본도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테면, ICJ에 (1) 한일 구조약과 1900년대 중반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한국 점령과 통치는 적법했는지 여부, (2)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적법했

30) 영어 원문: “The Allied and Associated Governments affirm and Germany accepts the responsibility of Germany and her allies for causing all the loss and damage to which the Allied and Associated Governments and their nationals have been subjected as a consequence of the war imposed upon them by the aggression of Germany and her allies.”

는지 여부, (3)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포기되었는지 여부 등 한일 양국 정부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ICJ 소송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 대표에 대한 강압으로 체결된 조약, 무력 위협 및 사용과 식민지 지배에 관여한 가해국들과 피해국들도 의견서를 내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 수도 있다. 이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주권 박탈뿐만 아니라 더 보편적으로 과거의 국제법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오늘날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러시아 국립아카이브 소재
일제강점기 한국관련 자료조사 현황

- 신동혁 (한국외국어대)

2020년 11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 국립 아카이프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자료 조사 현황”

신통혁(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목 차

- ▶ 자료 조사 및 수집 목적
- ▶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과 대상
- ▶ 아카이브별 조사 및 수집 현황
 1.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아베프리)
 2. 러시아국립영상사진자료보관소(РГАКФД, 영상사진보관소)
 3. 러시아국립녹음자료보관소(РГАФД, 녹음보관소)
 4. 러시아국립문학예술허문서보관소(РГАЛИ, 르갈리)
 5. 러시아국립軍事보관소(РГВА, 르그바)
- ▶ 발표를 마치며

자료 조사 및 수집 목적, 내용과 대상

○ 자료 조사 및 수집 목적

: 러시아와 한국 국립보관소의 일제강점기(1910.8.-1945.8.) 한국(한인) 관련 문서, 영상, 사진, 녹음자료 아카이브 구축.

○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과 대상

- 국내에 기 입수된 자료 파악 및 수집, 러시아 현지 문서보관소에서 직접 수집

- <목차>에 언급된 모스크바 소재 5개 러시아국립보관소

○ 조사 기간: 2018.1~2020.2.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1.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아베프리)

○ 개관

- 1720-1917년 기간의 대외정책 관련 문서 보관
- 전체 문서군 400개, 약 60만 건의 문서

○ 한국(한인) 관련 문서군(폰드)

- 러시아 서울주재 공사관(Φ.191)
 - 부산 주재 부영사관(Φ.297)
- 제물포 부영사관(Φ.191)
 - 마산포 부영사관(Φ.262)
- 진남포 부영사관(Φ.306)
 - 청진 부영사관(Φ.306)
- 서울 총영사관(Φ.283)
 - 중국과(Φ.143)
- 태평양과(Φ.148)
 - 일본과(Φ.150)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국내에 기 수집된 문서(량)
 - 외교사료원(국사편찬위원회): 문서군 148(28매), 문서군 150(24매) -> 52매
 - ※ 개인 소장 자료 미포함.
- 최근 조사 및 수집한 아베프리 문서(량)
 - 조사 대상: 태평양과 전체
 - 조사 방법: 현지공동연구원과 협업, 박종효 편역.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문서 보관소 자료집(한국편)』(선인, 2015)
 - 주요 성과: 목록(오퍼시) 기준 '열람 가능한' 전체 자료 확인(404건, 1,440매)
 - 주요 내용: 강제병합에 따른 극동(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법적 지위, 러시아 영토 내 한인단체들, 한인(단체)들의 반일활동 등.
 - 과제(한계): 복사 불가, 상당한 시간 소요, 현지 전문연구원 확보 문제 등.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2. 러시아 국립영상사진자료보관소(РГАКФД, 영상사진보관소)

○ 개관

- 모스크바 근교 도시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위치
- 1926년 개관

○ 한국, 북한 관련 영상사진자료 보유 현황(by 림마 모이세예바)

- 한반도 관련 영상 자료 약 362종(대부분 북한 관련 자료)
- 한국 관련 영상 자료 37종(대부분 한국전쟁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남,북한 사진 자료 840종
- 1929~1963년 남,북한 관련 사진자료 602종(절대다수가 한국전쟁 관련 자료)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국내에 기 수집된 영상사진자료
 - 국가기록원이 입수한 영상사진자료(대부분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관련 자료)
 - 이범진 공사 장례식 영상 자료
 - 반병률 교수가 2018년 처음 소개한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영상
- 최근 조사 및 수집한 영상사진자료
 - 조사 대상: 1910-1945년 한국(한인) 관련 영상사진자료
 - 조사 방법: 보관소 홈페이지와 보관소 내 자료카드, 영상자료 직접 시청
『러시아 국립 사진·영상물 보관소/음성물 보관소 자료집(한국·북한편)』(선인, 2015)
- 주요 성과: 영상자료 15건과 사진자료 67건(59건)에 대한 ‘샘플’ 이미지 자료 확보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주요 내용:

[영상자료]: 제1차 극동공화국민족대회(극동민족대회, 여운형, 김규식, 홍범도 등), 국어, 한인 유치원, 한인 콜호즈, 청진 작전, 한인 농부, 한인 집단농장, 한인 어부, 한인 사냥꾼 등

[사진자료]: 제1차 극동공화국민족대회(극동민족대회), 한인 어업 콜호즈, 집단 농장 '태평양인-콜호즈', 한인 주거 형태(판잣집), 한인 농업코뮌 노동자, 한인 예술가, 한인 농업조합, 한인 마을, 모국어, 한인 학교 학생, 식생활 등

- 과제: 특히 극동지역 관련 영상사진자료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 한국(한인) 관련 사진자료 오류 수정: 1910년 러시아 제국령 핀란드 지역에 ‘조선의 왕자’가?
 - 자료명: “조선과의 관계, 황제의 요트 ‘표준’”
 - 자료 설명: “황실 요트 ‘스탄다르트’에서 조선의 왕자에게 러시아 장교들 소개”
 - 분량: 전체 2장
 - 청나라 만주족 왕자 **자이타오**(Цай-Тао, 載濤(載涛))로 확인 및 수정.
- ✓ 일부 영상자료에서도 오류 발견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3. 러시아 국립녹음자료보관소(РГАФД, 녹음자료보관소)

○ 개관

- 1932년 개관
- 19세기 말~현재, 러시아와 세계사, 모든 장르의 문학, 예술 작품
- 22만 건 이상

○ 한국, 북한 관련 기존 확인 자료

- 『러시아 국립사진·영상물보관소/음성물보관소자료집(한국·북한 편)』(선인, 2015)
에 기록된 54건의 목록
- 주요 내용: 다양한 판본의 ‘아리랑’ 포함 ‘민요들’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최근 조사로 확인한 녹음자료
 - 조사대상: 기존에 조사된 자료의 녹음연도 확인 및 일제강점기 녹음자료
 - 조사 방법: 『러시아 국립사진·영상물보관소/음성물보관소자료집(한국·북한 편)』(선인, 2015)와 현지 보관소 자료카드
 - 주요 성과: 누락된 녹음연도 확인, 10건의 새로운 자료 목록 추가
 - 주요 내용: 1945년 이후 생산된 북한 관련 자료(‘전통춤’과 관련된 자료로 주요 내용은 역시 여러 판본의 ‘아리랑’ 포함 ‘민요들’)
- <석굴암 애곡>(1950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인관(Ким Ин Гвам), 안기옥의 작품 → [KBS광주 특별기획] 새봄을 나빌레라, 가야금 산조(2019.11.27.)

[https://www.youtube.com/watch?v=IwzrmJEd8aeM&ab_channel=KBS%EA%B4%91%EC%A3%BC]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4. 러시아 국립문학예술서보관소(РГАЛИ, 르갈리)

○ 개관

- 1941년 개관(* 2019년 건물 일부 화재 발생)
- 14-20세기, 러시아문학, 외국문화, 출판, 사회사상, 음악, 연극, 영화, 회화와 건축 등
- 총 문서군 수 3,102개 1백 30만 건

○ 기존에 확인된 한국(한인), 북한 관련 자료

- 로만 알렉세이비치 김: 작가, 對일본 소련 비밀요원
- 해방 이후 자료들: 배은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소련 순회공연 1950~1957』 (민속원, 2020년)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최근 조사 및 수집한 자료
 - 조사 대상: 일제강점기 한인(고려인) 극장, 한인작가 등
 - 조사 방법: 보관소 홈페이지 자료 정보와 현지 보관소 자료카드
 - 주요 성과: 문서자료 8건(약 25매)와 사진자료 12건
 - 주요 내용: 최호림의 이만사건에 관한 글, 공개되지 않은 한인(고려인) 극장 공연 모습 사진, 한인가족사진, 한강의 배에서 촬영된 외국인 사진 등
- 과제: 화재와 코로나 사태로 해당 기간 동안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5. 러시아 국립軍事문서보관소(РГВА, 르그바)

○ 개관

- 1920-1923년 적군 아카이브로 시작
- 아카이브 자료 구성: 5개의 카테고리(+22만 9천 건의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외국에서 입수한 문서들 보관)
- 1918-1940년: 군기관과 적군의 형성과 발전
- 1917-1922년: 중앙과 지방 군기관의 역사, 백군
- 1918-2001년/1939-1960년: 국경수비군과 내륙국 관련/내무부의 전쟁포로와 수감자 소비에트 군인사들의 개인 이력
- 외국에서 노획한 물건들에 관한 문서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국내에 기 수집된 문서(량)

- 이완종. 『러시아문서 번역집 14, 러시아국립군문서보관소(PTBA), 근대한리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자료총서 14』(선인, 2014년)
- 위 번역집에 이용된 문서군 170, 221, 1006 외에 문서군 185, 1055, 1709의 일부

○ 최근 조사 및 수집한 문서

- 조사 대상: ‘자유시 참변’을 전후한 시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부문에서 생산된 한인 관련 문서들
- 조사 방법: 르그바 홈페이지의 문서 목록과 르그바 문서 목록집(오피시),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 문서 보관소 소장 한·러 군사 관계 자료집』(동북아 역사재단, 2015)

아카이브 별 자료 조사 및 수집 현황

- 주요 성과: 대부분 한국어로 된 다량의 문서로 구성된 문서군 1709 포함 약 4,900매 이상의 한국관련 문서 확인 및 일부 문서 확보
- 주요 내용: 1920년대 극동지역 빨치산 부대들, 한인 항일운동세력(한인부대들), 특별사할린빨치산부대, 고려혁명군, 고려혁명군 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 연아무르주 한인공산당,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산하 한인부 관련 등
- 과제: 문서상태로 인한 열람 불가 문서의 증가, 할힌골(노문한) 전투 한인 포로 포함 한인 포로 자료 조사.

발표를 마치며

- ✓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검색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자료 열람 예약 가능
- ✓ 점차 보관소 자료 복사 설비 현대화
 - 보관소 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스캔에 의한 자료 복사 가능
 - 보관소 별 차이가 있지만 이메일로 자료 복사 신청 가능
- ✓ 한국(한인), 북한 관련 자료 수집 서둘러야!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9)
: 러시아국립역사문서관(RGIA)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동북아역사재단 최덕규

<목차>

1. 서론
2.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배경과 국제차관
 - 1) 러일전쟁과 러시아의 재정위기: 모로코 위기와 독일의 부상
 - 2) 코코프초프의 차관도입과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극동에서 유럽으로
3.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추진
 - 1) 방위예산 증액을 둘러싼 재무상과 군부 갈등
 - 2)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이토의 만주시찰
4.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러시아의 극동방위계획 변화
 - 1)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러일관계의 진전
 - 2) 육군상의 한러정보협력 구상과 좌절
5. 결론

1. 서론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вцов)와 일본의 원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그리고 한국의 애국지사 안중근이 만주에서 조우한 하얼빈의거(1909.10.26.)는 세계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한국적 차원과 미국의 만주문호개방 요구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대러접근이라는 동아시아 차원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유럽 복귀와 삼국협상체결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원인들이 중첩된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는 세계사적 시각의 거시적 연구가 필요한바, 제1차세계대전을 촉발한 페르디난드 황태자 저격의 사라예보사건(1914.6.14.)의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는 극동시찰 과정에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9.10.26.)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사태 수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습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언론의 반응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었다. 이는 안중근의 의거가 러일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중근의 신문과정에서 한국인으로 밝혀지자 그의 재판 관할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러시아경찰의 입회하에 일본영사들이 하얼빈의 한인거주지에 대해 수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던 인물이 바로 코코프초프였다.

코코프초프가 일본과의 분쟁 방지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한 것에 대해 내부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을 국경관구(管區)법원 검사의 동의를 받고 안중근을 일본측에 넘겼다고 외무성에 통보했지만,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러시아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음모에 의한 사건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과 수사 인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왜 코코프초프는 하얼빈의거를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했는가? 이는 러시아가 러일전쟁 패전 직후부터 복수전을 준비하였지만 결국 일본과 외교적 타협 및 협력관계 수립이라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결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되면서 극동의 방위가 차선책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1907년 러시아의 발트함대 재건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태평양함대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¹⁾

러시아가 유럽의 정치무대로 복귀한 배경에는 러일전쟁 직후 차르정부가 직면한 재정파탄의 위기가 있었다.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정파탄에 직면한 차르정부를 기사회생시킬 처방은 차관이었으며 대러차관 제공의 주역은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이들은 제국주의 패권에 도전하던 독일제국의 견제를 위해 러시아의 쇠퇴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와 일본의 동맹국 영국이 체결한 영불협상(1904.4.8.)을 토대로 여기에 러시아를 가담시켜 삼국(英佛露)협상 진영이 완성(1907.8.31.)된 것도 대독포위망 구축의 일환이었다.

이에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 차관제공과 연동하게 되었다. 이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받은 재원을 영불의 관심지역이 아닌 극동의 방위에 투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프랑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극동의 방위는

1) Щацилло К.Ф. От Порт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95-101.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역시 러시아의 대일접근정책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를 글로벌히스토리의 거시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배경과 국제차관”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배와 혁명의 혼란 속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차관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상실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영불주도의 국제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에서 대독포위망 구축을 위한 삼국협상을 구성해야 했고 극동에서는 러일화해를 도모해야했기 때문이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추진”에서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대신간의 갈등이 극동의 방위현황을 살피기 위한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육군성이 극동의 안보강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강화작업을 중시하였다면, 코코프초프는 러일우호를 통해 일본의 위협을 상쇄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을 모색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극동에서 러시아의 공백은 만주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경쟁심화로 표출됨으로써 이토와 코코프초프 하얼빈 회동의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에서는 코코프초프와 이토의 회담을 저지시켰던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것이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코코프초프가 영불차관단의 이해를 고려하여 한국의 독립 지원보다는 러일우호관계 수립을 우선시함으로써, 육군상이 제안했던 한러정보협력 구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거부되고 말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한일역사문제에 한정되어 있던 안중근 연구의 범위를 글로벌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세계사의 시각에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를 고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²⁾ 아울러 본 연구에는 러시아역사문서관(РГИА) 소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관련 기록물들이 활용되었음을 밝혀둔다.³⁾

2.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배경과 국제차관

1) 러일전쟁과 러시아의 재정위기: 모로코 위기와 독일의 부상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원동지역의 방위력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원동지역 방위력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이 억제되고 있다는 연혁룡강주 총독을 비롯한 현지 지방관들의 탄원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러시아가 러일전쟁 이후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시키면서 극동의 방위가 차선책으로 밀려난 것과 깊은 관련

2) 최근 10년간 안중근 관련 가장 많은 연구가 산출된 주제는 그의 "동양평화론"이다. 안중근 관련 연구 논문이 해방이후 2009년까지 200여 편이 발표되었던 반면, 최근 10년간(2009-2019) 150여 편의 관련 논문이 산출되면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 2010년 안중근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안중근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150여 편의 업적 가운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약 23%에 해당하는 3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광, “안중근에 관한 최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학술회의 기초강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재조명-한중일 미래공동체 구상-』, (2019.10.24.:동북아역사재단)].

3) 러시아역사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РГИА) 문서군 560, 문서파일 416-424번이 활용되었다.

이 있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부가 19세기 말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과 태평양함대 증강사업을 통해 태평양 국가로 부상하려했던 국책사업을 뒤로 미룬 채 유럽무대로 복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왜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 더 이상 태평양의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정책을 접게 되었을까?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의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소환되었을까?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조기개전을 결정하게 된 배후에 영일동맹에 근거한 영국의 군사협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양대 섬나라인 일본과 영국이 체결한 이 동맹은 러시아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가 러일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영국정부는 프랑스가 영불간의 무력충돌을 감수하면서 참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영국정부는 露佛동맹에 대해 우려했던 이유는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세가 유력해질 경우, 프랑스의 참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랜스다운(Lord Lansdowne) 외상은 개전이 임박한 러일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동맹국 일본이 수세에 몰리면 일본을 구원해야하지만, 일본을 위해 참전하기보다는 중재자로서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전력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 역시 러일전쟁에 참전할 경우, 프랑스와 불가피한 충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⁴⁾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체결한 영불협상(英佛協商:Entente Cordiale, 1904.4.8.)은 영불 양국이 러일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합의한 외교적 조치였다. 이 협상은 양국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타협이 그 요체인 바,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우월권과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우월권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영불협상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대립국면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우호관계 수립뿐만 아니라 영국과 건함 경쟁을 벌이던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영불 양국이 협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영국이 구상했던 큰 그림은 프랑스와의 협상체결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외교적 타협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이는 극동에서 러일전쟁이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유럽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불이 독일을 적국으로 상정한 새로운 외교 협력체제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구상을 하였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유럽에서 영불협상을 토대로 1907년 영국·프랑스·러시아 삼국이 외교적 대타협(三國協商)을 이루는 외교혁명의 단초가 되었다.⁵⁾

유럽에서 체결된 영불협상은 그것이 러일전쟁과 연동되면서 전쟁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규정력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만주에서 패전을 거듭하며 혁명의 신호탄이 된 “피의 일요일 사건(1905.1.22)”을 겪었음에도 전쟁을 지속하여 마침내 승전국이 되고자 하였다. 반면 동맹국 프랑스의 입장은 달랐다. 프랑스는 동맹국 러시아가 막대한 전비부담을 안고 소모적인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을 통하여 조기종전을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러일 양국이 교전국인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독일에 대항하는 협상진영으로 포섭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영불 양국이 러일전쟁의 장기화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유럽에서 독일에 대항하는 새로운 판짜기가

4) Edward E.W.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y*, Vol.42, № 144,1957. pp.19-24.

5) White J.A.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2.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러시아에 조기종전을 설득하기 위해 취한 수단은 차관제공의 중단이었다. 전비조달 통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장기전 의지를 꺾고자했다. 1905년 3월 만주의 봉천(奉天)전투 직후 “순전히 재정적 시각에서 전쟁의 지속은 우리를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ковцов)의 상주(上奏)는 프랑스의 대러차관 중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⁶⁾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講和)가 필요하지만, 이를 억누르는 유일한 명분은 러시아의 위신을 손상시킬 일본의 강화조건”이라는 외무상 람즈도르프가 주불대사에게 보낸 전문은 프랑스의 대러차관 중단의 효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⁷⁾ 따라서 프랑스의 차관중단은 러일전쟁의 분수령으로서 러시아가 전쟁 지속에서 강화(講和)로 방향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러일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원했던 또 다른 원인은 러시아의 쇠락에 대한 유일한 수혜자가 독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패전과 혁명이 촉발한 내부혼란은 연쇄적으로 동맹국 프랑스의 모로코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는 영불협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모로코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독일은 모로코의 독립과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요구(1905.3.31.)하고 나섰다.⁸⁾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틈타 모로코에 개입함으로써 동맹국 러시아가 없는 프랑스에게 독일은 결코 용이한 상대가 아니었다. 프랑스 외상 델카세(Theophile Delcassé)가 독일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료들을 설득했음에도 프랑스의 루비에(Maurice Rouvier) 수상이 수긍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영국함대는 파리를 구해 주러 올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⁹⁾

러일전쟁의 봉천전투(1905.2.20-3.10.)와 연동된 모로코 사건은 러시아의 패전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로코 문제가 독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국제회의 소집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1905.6.6.)된 것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파국이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 약화로 연동되었기 때문이었다.¹⁰⁾ 따라서 모로코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

6) Кузенцова О.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 -1905 г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3, 2009. С.39-40.

7) 1905년 3월 23일 프랑스 외무장관 델카세(Theophile Delcassé)는 주불 러시아 대사 넬리도프(Нелидов А.И.)로부터 강화 의향을 전달받고 주불 일본공사 모토노(本野一郎)를 초치하여 이를 전달하고 프랑스가 조기 종전을 위한 중재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동년 3월 30일 일본공사 모토노가 진정 러시아가 강화를 원하는지 확인해오자 델카세는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강화조건은 배상금과 영토할양임을 통보했다. 이에 모토노는 일본정부가 두 번째 조건을 수용할 수 있지만, 배상금은 막대한 준비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러시아는 중재국으로 미국보다는 프랑스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강화협상에 동의한다면, 델카세는 영국외상 랜스다운이 일본에 영토할양요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О.Н.Кузенцов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 -1905 гг. С.40.

8)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Cambridge Uni. Press, 2014. pp.329-330. 1905년 3월 31일 빌헬름 2세는 지중해 항해도중 모로코의 항구 탕지어(Tangier)에 기항하면서 프랑스와 영국과 긴장을 고조시켰다. 영불협상으로 프랑스의 세력권으로 인정되었던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개입은 유럽에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프랑스 외상 델카세의 사임과 1906년 1월 알제시라스 국제회의 소집의 원인이 되었다.

9) Кузенцова О.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 -1905 гг. С.42.

10)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pp.418-436. 스페인의 알제시라스(Algeciras)에서 개최된 국제회의(1906.1.16.-4.7.)는 1905년의 프랑스와 독일의 모로코 위기를 해결할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기는 독일이 독립국가인 모로코를 보호국화 하려는 프랑스

인의 알제시라스에서 국제회의(Algeciras Conference, 1906.1.16-4.7.)를 소집하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완전한 외교적 패배를 의미했다.

프랑스 외상 델카세의 사임결정은 독일의 개입으로 야기된 모로코위기(Morocco crisis)를 불독(佛獨) 양국간의 외교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¹⁾ 러시아의 패전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그의 실책이었다. 따라서 독일이 영불협상으로 형성된 유럽의 세력 판도에 강력하게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모로코위기는 만주에서의 전황이 실시간으로 유럽의 국제정세에 투영된 산물이라 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패전의 여파는 유럽에서 동맹국 프랑스의 입지약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경우, 영국은 자국군대를 프랑스로 파병할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1905년 겨울부터 영국 참모본부에서는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유린할 경우, 영국 육군이 유럽대륙에 상륙하여 프랑스 육군과 공동작전 수행을 계획하였다.¹²⁾ 프랑스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은 혁명의 위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영국 육군과의 군사협력 계획에 호응했다. 영국이 해전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전쟁방식을 포기하고 육군원정대(British Expeditionary Force)의 유럽 대륙파견까지 준비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전후 복구에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적극성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리 재정 지원 규모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었다. 이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받은 재원을 영불의 관심지역이 아닌 극동의 방위에 투입할 수 있을까?

2) 코코프초프의 차관도입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극동에서 유럽으로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종전 무렵 파산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포츠머스(Portsmouth) 강화협상이 진행되던 1905년 9월 국고는 바닥났고 12월 모스크바에서 정점을 찍은 혁명은 러시아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러시아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신임 재무상 쉬포프(И.П.Шипов)는 1905년 이미 시중의 통화량이 72% 증가했음에도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루블화의 안정을 위해 전쟁기간 내내 유지되었던 금본위제의 포기로 나아가는 수순이었다.¹³⁾ 따라서 러시아의 재정파탄을 막아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해외차관 유치였다.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차관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포츠머스강화회의 전권대표 자리와 마찬가지로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국차관 도입을 성사시켜야할 임무는 누구도 맡지 않으려 하였다.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았던 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전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чов)를 천거했던 사람은 시베리아철도 부설을 주도했으며 포츠머스 강화회의 러시아 측 전권수석을 담당했던 비테(С.Ю.Витте)였다.¹⁴⁾ 따라

의 팽창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불협상의 결속력 역시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4개국(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만 투르크, 모로코)이 참가한 회의에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11)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1961, Vol.39, No. 93, p.506.

12) William J. Philpott, *The making of the Military Entente, 1904-1914: France, the British Army, and the prospect of Wa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Oct. 2013, Vol.128, No.534, pp.1155-1156.

13)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1961, Vol.39, No. 93, pp.498-500.

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코코프초프에게 부여된 차관도입의 임무는 러시아를 소생시키기 위한 지상의 과제가 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프랑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황제를 알현한 사실은 외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II세는 코코프초프에게 "러시아의 재정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차관이 없으면 러시아의 파국은 불가피함을 통보토록 훈령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모로코 문제와 관련한 알제시라스 회의에서 프랑스를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라고 지시했다.¹⁵⁾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모로코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프랑스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휴대하고 차관도입 교섭을 위해 1905년 12월 30일 파리로 출발했다.

코코프초프의 파리 방문은 루비에 수상의 적극적인 환대를 받았으나 프랑스의 은행가들은 냉담했다. 프랑스의 은행가들이 대러 차관에 주저했던 것은 러시아의 전쟁 패배보다는 오히려 혁명의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프랑스 좌파언론들도 신규 대러차관 제공은 러시아 전제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¹⁶⁾ 따라서 코코프초프가 대러 단기차관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프랑스 은행단에 대한 루비에 수상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었다. 루비에의 설명에 따르면, 대규모 대러차관 제공은 정황상 곤란하지만, 임시적으로 1억 루블 규모의 단기 차관은 프랑스 은행들의 보유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수상은 모로코문제가 해결되어 국내 정황이 안정되는 즉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우선 단기차관을 주선했다.¹⁷⁾ 환언하면 모로코 문제를 둘러싼 알제시라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독일이 아닌 프랑스를 전폭 지지하는 것이 대러 차관의 선결조건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게 프랑스와의 동맹(1891)은 당초 아시아를 무대로 영국과 경쟁하기 위한 지렛대였다.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도왔던 영국과 화해하는 것보다, 유럽에서 영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던 독일과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역시 프랑스를 알제시라스 회의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의 전쟁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러일전쟁의 늪에 빠져있던 러시아가 동맹국을 지원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¹⁸⁾

빌헬름 2세는 독일을 맹주로 한 유럽대륙 국가들의 동맹체 구성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다. 영국, 일본, 미국은 유럽 대륙동맹(大陸同盟)의 가상적이 될 것이었다. 그는 러일전쟁의 패전국인 러시아를 끌어안는다면, 그의 동맹국 프랑스도 포섭하는 유럽대륙동맹(European continental league)을 구성함으로써 영불협상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¹⁹⁾ 따라서 알제시라스 회의에서 러시아의 명확한 거취 표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의 입장은 그것이 러시아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14)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Т.1, Париж, 1933. С.118-119.

15)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С.119. 코코프초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황제는 프랑스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의사를 외무성이나 주불대사를 통해 전달하기 보다는 황제의 특사 코코프초프가 직접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더함으로써 차관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고 한다.

16)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p.501. 프랑스는 1888-1904년에 60억 프랑의 대러 투자가 있었음에도, 대러차관을 위한 프랑스 은행 컨소시엄(consortium)의 주간사 크레디트 리옹(The Crédit Lyonnais)은 새로운 대러 차관 논의 자체를 꺼렸다.

17) К переговорам Коковцова о займе, *Красный архив*, Т.3(10), 1925, С.12-17.

18)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pp.418-419.

19) *Ibid.*

패권 전이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정부 대표 코코프초프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들이 파리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모인 것(1906.4.16.)은 알제시라스 회의가 독일의 빌헬름 2세의 외교적 실패로 막을 내린(1906.4.7.) 직후의 일이었다. 이 회동에서 러시아는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22억 5천만 프랑의 전례 없는 대규모 대러 차관(연리 5%)의 제공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²⁰⁾

1906년 대러 차관의 주축은 프랑스 자금이었으나 영국이 대러차관의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독일의 방해로 이 차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정 위기에 몰린 러시아의 운명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끼칠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6년 대러차관은 영국이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²¹⁾

1906년의 대러 차관이 러시아 의회(Дума) 개회 직전에 차르정부에 제공되었던 사실 역시 차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은 대러차관이 전제주의 차르정부를 회생시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회가 소집된다면 차관도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프랑스정부에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당세력인 러시아 제헌의회당의 마클레코프(B.A.Маклеков)가 프랑스 재무상(Raymond Poincaré)에게 대러차관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편지(1906.4.18.)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비판의 요지는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러시아의 민주화에 무관심하고 전제주의 체제와 결속을 공고히 하고자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독일황제 빌헬름 II세 조차 차르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러차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는 러시아 의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전제정부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²⁾ 따라서 러시아 차르체제의 회생에 기여한 1906년 대러차관은 제국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을 뿐, 결국 볼셰비키 혁명의 주요 단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다.

1906년 대러차관에 참여한 영국수상 그레이(E.Grey)는 러시아의 급진주의자들의 기대를 버리고 차르정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독일이 대러차관 제공에 영국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겐 결정타가 될 것이고 독일에겐 엄청난

20)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С.162. 러시아의 파리주재 재무관 라팔로비치(A.Rafalovich)는 1906년 1월부터 대러 차관 계약일까지 프랑스 언론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20만 프랑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포츠머스강화조약 체결 후, 프랑스 언론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금 규모를 10만 프랑으로 축소하자 파리 언론들은 대러 차관 제공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임으로써 이를 회유하기 위함이었다.(J.W.Long, *Russian Manipulation of French Press, 1904-1906*, *Slavic Review*, Vol.31-2, pp. 352-353.)

21)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p.508. 이 차관은 1907년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오랜 대립을 종식시키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에 대한 영러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2) 마클레코프는 프랑스 재무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 자유주의 세력이 반대하는 대러차관이 이루어진다면 차르체제의 파산을 지연시킬 뿐이고 혁명의 재발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파탄의 경우, 전제체제가 회생한다면 산업과 통상의 자유가 결핍됨으로써 경제는 낙후될 것이고 대학과 지식인 그리고 언론탄압은 반복될 것이다. 반면 군대와 함대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차관도 증가함으로써 결국 국가는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혁명의 경우, 러시아는 입헌주의 체제가 되었으나 정부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구체제로 복귀하려는 쿠데타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혁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재정파탄은 프랑스가 경속하게 제공한 자본뿐만 아니라 선의의 자본 역시 집어삼킬 것으로 경고했다.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pp. 508-511.

승리가 될 것이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 우리가 차관제공에 동참할 경우, 러시아의 급진주의자들은 그 심각한 결과에 대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들과 소원해질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왜냐하면 영국에게 러시아의 민주화도 중요했지만, 대러차관이 무산될 경우 예상되는 독일과 러시아의 접근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었다.²³⁾

영러협상(英露協商)의 체결(1907.8.31.)은 1906년 대러차관 성사 이후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일본에 제의한 동아시아문제 관련 외교적 타협안 역시 러일협약 체결(1907.7.30.)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과 남만주를 일본의 이익권으로, 외몽골과 북만주는 러시아의 이익권으로 비밀리에 상호 인정한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²⁴⁾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견제하거나 저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²⁵⁾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의 방향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고 있는 종래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3.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추진

1) 코코프초프의 재무상 임명과 군부와의 갈등

코코프초프는 1906년 차관도입을 계기로 재무상에 임명(5.8.)된 후²⁶⁾ 1914년까지 러시아의 재정을 관장했다. 패전과 혁명의 혼란기에 누구도 중책을 맡지 않으려한 상황에서 그가 재무상에 장기 복무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⁷⁾ 대내적으로 황제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대러 차관 제공이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러불(露佛)동맹이 영불러(英佛露) 삼국협상(1907)으로 발전함으로써 국내개혁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는 대러차관을 성사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했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 그리고 신임 프랑스 대통령 아르망 팔리에르(Armand Fallières)까지 만나 이들을 설득했다. 내무장관 클레망소(G.B.Clemenceau)의 경우, 러시아의 일부 인사들이 차관 제공에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연 차르 정부가 대외 차관계약을 체결할 합법성을

23) William Mulligan, From Case to Narrative: The Marquess of Lansdowne, Sir Edward Grey, and the Threat from German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30. No.2, 2008. pp. 301-302

24)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 1(1972). p.33.

25) 러일협약은 2개조의 공개 조항과 4개조의 비밀조항이 있다. 비밀조항 제2조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존하는 한일 정치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John A. White,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304-306.

26) В.Н.Коковц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С.171-173. 1906년 대러차관 계약을 누구보다 반겼던 인물은 황제 니콜라이 II세였다. 차르는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짐에게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코코프초프에게 타전한 후, 그를 재무상으로 기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했지만, 결국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의회(Дума) 소집 전날(1906.5.8.) 그에게 전달된 봉투는 황제의 재무상 임명장이었다

27)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вцова Эд.Нецлину, 28 Июля(8.10.)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이하 К.А.로 약함)1923 Т. 4. С.133. 네출린 역시 새로운 내각의 재무상에 코코프초프가 임명된 것이 프랑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선의 보장책으로 간주했다.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1905년 황제의 칙령(10.17.)에 따라 입법부를 설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정을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차관계약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이었다.²⁸⁾ 요컨대 프랑스정부는 독일 견제를 위해 러시아의 조속한 전후복구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대러차관이 국내개혁 보다는 차르체제의 연명치료에 투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러차관에 주저하는 프랑스 각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러시아와 프랑스 양측에서 펼쳐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자 헤이그 중재재판소 상임위원이었던 마르텐스(Ф.Ф.Мартенс)는 차르 정부가 국제차관 계약체결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클레망소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 법적 근거는 "1) 차르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차관계약을 체결할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2) 의회(Дума)는 재정문제에 대한 소급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르텐스는 "러시아의 어떠한 정부나 입법부도 제국정부가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²⁹⁾

이에 프랑스 은행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프랑스의 재무장관 푸앵카레(Raymond Poincaré)가 대러차관 성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파리-화란은행(Banque de Paris et des Pays-Bas)을 대러차관을 위한 컨소시움의 주간사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은행장 네츨린(E.Netzlin)과 코코프초프 사이에 설정된 채널은 차르정부의 재정안정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되었다.³⁰⁾

네츨린이 코코프초프에게 러시아의 1907년 예산편성에 대해 문의 편지를 보낸 것은 러시아 재정의 대불(對佛)종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코코프초프는 네츨린에게 보낸 답신(1906.8.10.)에서 1907년 예산안은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는 1907년 초에 상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제1차 러시아의회는 1906년 5월에 소집되었으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8월 차르에 의해 해산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7년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전년도 기준을 따르되, 변경된 부분만 사후 추인을 받도록 한 헌법 74조를 준수할 것임을 통보했다.³¹⁾

프랑스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한 코코프초프가 수립한 1907년 예산의 편성원칙은 균형재정이었다.³²⁾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는 새로운 예산소요는 입법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러시아 국내 상황은 코코프초프가 적자가 없는 균형

28) М.А.Кочеткова, К Истории заключения займа 1906 года, *Вестник Воронеж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Исто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Социология*. 2012. № 1, С. 117-118.

29) James W. Long, French Attempts at Constitutional Reform in Russia,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Neue Folge, Bd. 23, H. 4 (1975), pp. 498-499.

30) 1906년 초 프랑스는 러시아에 90억 프랑을 투자한 채권국이었으며 이는 프랑스의 국외투자의 1/4에 해당했다. James W. Long, French Attempts at Constitutional Reform in Russia, p.496.

31)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вцов Эд.Нецлину, 28(8/10) июля. 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1923 Т. 4. С.133-136.

32)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вцов Эд.Нецлину, 14(27) нояб. 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1923 Т. 4. С.143-146. 코코프초프는 네츨린에게 "내년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 규모에 만족해야한다. 새로운 조세수입을 위한 과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으나 의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여타 새로운 과세안들은 의회가 새로 소집될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07년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나의 과세입안이 의회에서 언제 심의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세안은 결국 1908년 이후에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알렸다.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재정지출의 토대가 되는 국고수입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바, 재정지출을 극도로 절약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경우,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음을 네츨린에게 통고했다. 첫째, 긴급 구호자금이었다. 가뭄과 흉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자금으로 5천만 루블이 편성되었다. 이는 1907년도 러시아 철도부설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다. 둘째, 긴급 방위예산이었다.³³⁾ 실제 소요예산은 미정이었으나 연차별 완수목표를 설정한 국방력 강화계획안은 1907년 예산과는 별도로 두마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1907년 예산에 국방력 강화예산을 육군 일반예산과 완전히 별개로 할지 아니면 국방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지 네츨린에게 자문을 구했다.³⁴⁾ 따라서 러시아의 국방예산도 프랑스 자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편성되었던 것이다.

코코프초프는 차관을 통해 러일전쟁 직후 재정파국의 위기를 힘겹게 넘겼음에도 그를 기다린 또 다른 복병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군사력 재건사업이었다. 육군성은 러일전쟁 이전보다 증강된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육군상 레디게르(A.Ф.Редигер)는 병력과 장비 부족을 러일전쟁 패전의 원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레디게르가 1906년 10월 육군전력 재건을 위해 134,000명의 상비군 병력 증강을 위한 2억1천500만 루블의 예산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³⁵⁾

육군성의 이같은 요구에 코코프초프가 택한 방위비 증액 억제 방안은 국가의회(두마)에 법안심사를 위임하는 것이었다. 입법부의 힘을 빌려 군부의 방위비 지출증가를 견제하려는 방식이었다. 재무상은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1907년 예산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안이 입법부의 승인을 얻은 재정의 확보였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육군성의 방위비 증액요구는 의회의 동의를 거친 국채발행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한 것이 되었다.

재무상이 군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맞서 방위비 예산을 입법부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은 이후 재무성과 육·해군성의 격렬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재무성에 대한 육군상 레디게르(1905-1909), 해군상 비리료프(A.А.Бирилев:1905-1907), 디코프(И.М. Диков: 1907-1909)의 예산증액 압박이 심해질수록 재무상 코코프초프는 이에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가 군부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이유도 세수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곤란한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성이 새로운 추가예산을 요구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은 구조조정이었다. 이는 병력을 감축하여 그 절감비용으로 새로운 방위력 증강사업에 투입한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³⁶⁾ 결국 1909년 3월 육군상 레디게르가 사의를 표명한 것도 각료회의에서

33) Там же. С.145-146.

34) Переписка Эд.Нецлин В.Н.Коковцову, 4 декабря 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1923 Т. 4. С.146-147. 네츨린은 비상예산과 관련하여 몇 억 루블이 들던지 국방개혁 계획에 소요될 예산은 굳이 대외차관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매우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러시아가 1907년에 재차 외국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의 재정에 대한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35) Шацилло К.Ф. От Портс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 126-127. 러시아 육군은 병역의무자 138,100,000명의 1%를 평시 병력으로 운용함으로써 1900년 1월 1일 기준 육군 병력은 1,385,061명이었다.

36)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 вопросу о противоречия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по пов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накануне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зв. Сара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Нов. Ис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17. Т. 17, вып. 4. С.447-449. 1909년 육군성의 예산은 4억7천만 루블인바, 이는 국가예산

육군성의 추가예산 배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시의 상비군 병력 감축과 군부대 재조직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수호믈리노프 신임 육군상은 전임 레디게르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국방 예산을 둘러싼 육군성과 재무성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는 코코프초프가 편성한 1910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특별각료회의(1909.6.22.)에서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육군은 가상적국의 전투력에 준하는 규모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인바, 국경선의 길이, 수비해야할 영토의 방대함과 거주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교통상황을 고려할 경우, 평시의 병력도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그 논거였다.³⁷⁾ 따라서 국방예산을 둘러싼 양대 부처간의 이같은 입장차는 1909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와 관련한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의 필요성은 연흑룡강 군관구(軍管區) 사령관 운테르베르게르의 정책건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요새를 중심으로 그 외곽에 육상과 해안 방위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군의 상륙과 후방공격을 격퇴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일본 및 청국과 새로운 분쟁이 발발할 경우, 연흑룡강 군관구는 유럽러시아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극동러시아를 사수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³⁸⁾ 따라서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현지시찰을 통하여 해법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과제가 되었다.³⁹⁾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코코프초프와 신임 육군상 수호믈리노프의 논쟁에서 제정러시아의 관료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 논쟁은 육군상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의 지연책임이 재무성에 있음을 상주한 보고서가 발단이었다. 육군상은 전후 복구가 시작된 3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 주요 원인을 예산지출 승인을 하지 않았던 재무성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블라디보스토크 방비강화를 위한 예산을 재무성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코코프초프는 육군상의 책임전가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3년간 블라디보스토크 방비강화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산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각료회의에서 이미 3년 전에 육군성에 배정된 예산조차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불용(不用)예산이 쌓여있음에도 육군성에 새로운 예산 배정을 반대하지 못한 것이 재무성의 유일한 책임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이 수호믈리노프의 예산요청에 대해 육군성 자체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⁴⁰⁾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

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37) *Особый Журнал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6 июня 1909 г.

38) P.C. Авилов, По Транссибу на Восток. Визит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В.Н.Коквцова в Приамурский Военный окру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ни., № 405. 2016, С.38-49.

39) В.И.Калинин, Н.Б.Аюшин, Крепость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я и АТР*. № 4. 2000. С.112-121.

40) Шацилло К.Ф. Последние во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и*, № 7-8, 1991. С.224-233. 극동지역 방위력 강화문제는 러시아의 군대의 근대화작업의 일환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러시아 군장비의 근대화 사업에 18억 루블이 책정되었으나 실제로 191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76,500,000루블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이 부족했거나 코코프초프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 행정부, 특히 육군성과 해군성의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군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당면한 예산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었다.⁴¹⁾

2.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시찰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ковцов)의 극동시찰 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얼빈 회동은 예정에 없었다. 코코프초프는 1909년 9월 22일 동청철도(東清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와 하바롭스크 및 블라디보스톡 시찰계획에 대한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재가를 득했다.⁴²⁾ 재무상의 극동시찰은 1910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은 시찰기간과 장소는 극히 제한되었다.⁴³⁾ 5주의 시찰기간에 동청철도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코로스토베츠는 재무상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으로 와야 했다.⁴⁴⁾ 코코프초프는 봄부터 일본 정부의 訪日 제안을 받았음에도 도쿄방문 계획은 그의 일정에 없었다. 따라서 하얼빈에서 이토와의 회동은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 여정에 오른 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을 단행한 목적은 러일전쟁 이후 극동의 방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극동시찰 여행의 발단은 연흥룡강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П.Ф.Унтербергер)와 육군대신 (В.А.Сухомлинов)의 상주서에 기인했다. 1909년 2월 9일 운테르베르게르가 각료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연흥룡강주 비상예산요청 관련 기밀보고서는 재정부쪽으로 잠들어 있는 긴급 현안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러시아 원동지역의 방위력증강을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본격화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유럽러시아의 주민들을 이곳으로 적극화하고 둘째, 1907년에 시작된 아무르철도 부설공사를 조기 완공하고 셋째, 흥룡강하구와 블라디보스톡의 경계강화를 위한 육군과 함대증강을 요구하고 있었다.⁴⁵⁾

육군상 수호몰리노프 역시 운테르베르게르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를 차르에게 상주했다. 그 요지는 러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방위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블라디보스톡의 요새화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육군대신은 블라디보스톡 방비강화를 위한 예산을 재무성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재무상에게 돌리고 있었다. 따라서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해군이 전멸함으로써 극동의 해안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만주에 부설된 동청철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의 진단에 따르면, 극동방위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제정러시아는 만주의 동청철도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우려할 만큼 극동방위의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었다.

41)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449-450. 1906년 러시아헌법(4.23.)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등장함으로써 행정부서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부처별로 다양한 층위를 드러냈다. 특히 육군성은 예산획득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차르의 심복임을 자처했던 군부 특히 육군상은 국가적 의미가 부여된 방위사업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2)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6-8.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сентября 1909 г.

43)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вцов Эд.Нецлину, 21 сентября(4 октября) 1909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1923 Т. 4. С.155-156. 코코프초프는 1909년 10월 4일 극동으로 출발하면서 대러차관을 위한 프랑스은행건소사업의 네출린에게 편지를 보냈다. 코코프초프는 러시아의 대외신용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던 러시아의 1910년도 예산편성 자료들을 송부했음을 알렸다.

44)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9. Копия телеграммы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КВЖД в Пекине от 10 сентября 1909 г. на имя Коростовца.

45) Р.С. Авилов, По Транссибу на Восток. Визит Минстр Финансов В.Н.Коковцова в Приамурский Военный окру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 университета*. № 405, 2016. С. 38-39.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의 방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왜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의 제1의 과제가 되었다. 재무상 역시 지난 3년간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극동방위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원했었기 때문이었다.⁴⁶⁾ 이는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재무상을 직접 극동에 파견한 이유이기도 했다.

1909년 10월 1일 코코프초프는 극동시찰 여정에 올랐다. 그는 10월 11일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철도의 분기점이었던 만추리(滿洲里)역에 당도했을 때, 극동시찰의 최대 고비가 될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통해 하얼빈에서 회동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 주일 러시아 상무관 빌렌킨(Г.А.Вилекин)이 타전해왔기 때문이었다.⁴⁷⁾

같은 날(10.11.) 주일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는 이토의 만주시찰여행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외무성에 보고했다. 그 요지는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이토의 만주시찰 여정은 대련-심양-하얼빈-블라디보스톡이며 약 8명의 수행원이 동행예정이다 둘째, 이토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친러 인사라는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코코프초프와 회동을 원한다. 셋째,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간의 접속문제와 극동문제 전반에 걸친 러일 양국간의 관계강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⁴⁸⁾ 이들 후(10.13.) 주일대사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보다 자세한 보고를 해왔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토의 하얼빈 방문은 코코프초프를 만나 최근에 체결(9.4.)된 청일협약⁴⁹⁾과 관련한 협의가 목적이며 둘째, 러일 상호간의 만주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청철도와 남만철도의 화물 환적(換積)에 관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하고, 러일전쟁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거부한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토의 하얼빈 방문 목적이 청일협약으로 불거진 미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러접근책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주일상무관 빌렌킨(Г.А.Вилекин)이 코코프초프에게 보낸 기밀보고서(1909.10.14.)는 이토 히로부미가 사전 협의 없이 급히 만주로 향발하게 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⁰⁾ 빌렌킨은 이토가 만주시찰 목적을 기분전환 겸 오랫동안 못가 본 장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연의 목적은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미일관계의 타개책을 찾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토의 출장지역이 최근 미일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만주임에 주목, 이토의 만주시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업무용 출장으로 파악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지역은 청국이 '만주의 광산과 철도 관련 청일협약'(1909.9.4.)⁵¹⁾을 통해 무순(撫順)탄광과 안동-봉천철도 보강공사 구간의 광산채굴권을 일본에게 양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청일협약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한 “루

46)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 448-449.

47) РГИА. Ф.560. Оп.28. Д.416. Л.44. Телеграммы Велинкина из Токио на мия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от 28 сентября 1909 г.

48) Там же. Л.61.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28 сент. / 11 октября 1909 г.

49) Там же. Л.77-78. Текст 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ы Товарища МИДа на имя Коковцова, 30 сентября 1909 г. 최근의 청일협약이란 1909년 9월 4일 청일양국이 체결한 '만주의 광산과 철도 및 간도 관련 협약'을 의미한다.

50) РГИА. Ф.560. Оп.28. Д.421. Л.7-15.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Виленкина Коковцову от 1 октября 1909 г.

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09. pp. 118-120. Japanese-Chinese Agreement concerning Mines and Railways in Manchuria.

트-다카히라(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⁵²⁾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미일갈등의 요체는 전리품으로 획득한 남만주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한 일본과 "문호개방(Open door)과 기회균등"의 슬로건으로 만주시장 진출을 도모한 미국의 이해 대립에 있었다.

빌렌킨은 이토의 하얼빈 방문의 숨은 공로자로 만철(滿鐵)총재를 역임했던 고토 신페이를 꼽았다. 그는 재무상의 극동시찰 소식을 접하고 도쿄방문을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불가능해 보이자 가츠라 수상을 통해 이토의 만주시찰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 말레비치를 방문하여 하얼빈 회동을 제안했고, 고토 신페이를 통해 빌렌킨에게 이 제안을 재무상에게 타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말렙스키 말레비치 대사가 이토의 하얼빈 회동 제안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주목했다. 그는 하얼빈 회동을 일본측의 우호적인 대러 접근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일부 언론에서 선동했던 반일 여론을 완화시키는데 회동목적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정부 역시 이 회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게 러일 양국이 만주에서 이해를 일치시키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국의 지속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일본은 대러접근을 통하여 만주의 문호개방과 상공업상의 기회균등 그리고 청국의 영토보전을 약속한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무력화하는 대신 만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대러타협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핵심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나포한 러시아 선박의 반환 문제였다. 이는 러시아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결과제로 남겨진 동청철도회사 소유의 증기선 3척 [만추리아(Маньчжурия)號, 아르군(Аргун)號, 묵덴(Мукден)號]의 무조건적인 대러 반환 문제를 하얼빈 회동의 의제로 삼고자했다.⁵³⁾ 빌렌킨이 동청철도회사 소유의 선박(1,759,000루블 상당) 반환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유도 일본이 남만주철도와 동청철도의 화물환적에 관한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토의 회동제안에 대해 코코프초프가 자신의 하얼빈 체류 일정을 통보함으로써 회동준비가 본격화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정의 3박4일(10월 24-27일) 혹은 상행선의 2박 3일(11월 7-9일) 가운데 택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토에게 주어졌다.⁵⁴⁾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를 직접 방문(10.11.)하여 코코프초프가 10월 25일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주

52) 『共立新報』 1908년 12월 16일, "論美日協商,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한 것을 의론함"

이승만이 공립신보에 기고한 "루트-다카히라 협상"에 대한 분석 논설은 이토의 하얼빈 방문의 중요한 동기였던 이 협상안의 조약문 번역과 의미가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있다. 5조약 역문, 1조, 미일양국 정부는 태평양에서 그 상업을 자유로하며 또한 평화로하여 장려할일, 2조, 미일양국정부는 호말이라도 침략적 주의를 두지 말고 태평양에 재하여 현금상태를 유지하며 청국에 재하여 상공업의 기회균형을 보호하여 대할 일, 3조, 미일양국은 태평양에서 피차의 영토를 공경할 일, 4조, 미일양국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적 수단을 다하여 청국의 독립보전과 청국에 있는 미국인민의 상공업 기회균형주의를 옹호하기로써 각국상민의 공동이익을 보호케 할 일, 5조 일조에 불행한 일이 있어 이상의 말한 바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양국정부가 서로 먼저 의논하여 결정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두 정부를 결박하여 자유행동을 못하게 함이라. 후일 시비가 이에서 많이 생기리라 하노라. 이에 이승만은 이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부여를 하였다. "우리의 소견으로 말할진대 이 협상이 양국의 시비를 막은 것도 아니오 물린 것도 아니오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 하노라."

53) РГИА.Ф.560.Оп.28.Д.416.Л.132-133. Телеграмма Управления дороги Директору Канцелярия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октября 1909 г. 동청철도 이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묵덴호는 1904년 1월 24일(서력 2.7.)부산에서, 아르군호는 1월 25일(2.8.) 대한해협에서, 만추리아호는 2월 4일(2.17.) 나가사키에서 일본 해군에 나포되었다.

54) РГИА.Ф.560.Оп.28.Д.421.Л.2.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Виленкину, 28 сентября 1909 г.

러 일본대사관의 보고를 재확인하고 하얼빈 회동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전달했다.⁵⁵⁾ 10월 14일 주일상무관 빌렌킨은 코코프초프가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일본에 통보하자, 이토의 하얼빈 도착날짜가 10월 26일로 확정되었음을 기밀 보고하였다. 마침내 빌렌킨은 이토의 수행원 명단과 함께 그의 하얼빈 도착일정에 대한 최종 보고(1909.10.16.)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이토 일행이 관성자(寬城子)에서 하얼빈으로 10월 25일 밤차로 출발예정임을 알게 되었다.⁵⁶⁾

러시아황제는 코코프초프가 이토와의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보고한 상주서에 “중립지역에서 그러한 회동은 유익할 것이다”라고 재가(10.15.)하였다.⁵⁷⁾ 하얼빈은 러시아 혹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과 간섭이 배제된 채 양국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지일 수 있었다. 러시아 부외상 사조노프(С.Д.Сазонов)가 하얼빈 회동을 러일전쟁 전 후처리의 미결과제 해결의 기회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일본정계 거물이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러시아 재무상을 찾아오게 한 정황은 결코 러시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4.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

1)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러일관계의 진전

주일러시아상무관 빌렌킨이 코코프초프에게 이토의 하얼빈 도착 일정을 보고(10.16.)함으로써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파악한 이토의 일정은 10월 25일 밤 관성자를 출발하여 10월 26-27일까지 하얼빈에서 체류하다 10월 27일 밤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는 여정이었다. 이에 코코프초프는 연흥룡강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에게 이토와 하얼빈 회동 이후 하바롭스크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예정이지만,⁵⁸⁾ 정확한 날짜를 예정할 수 없다고 타전(10.24.)할 수밖에 없었다. “이토와 회동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둘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⁵⁹⁾ 따라서 당초 1909년 10월 24일 저녁 6시 하얼빈에 도착하여 10월 28일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예정이었던 코코프초프는 10월 25일부터 이토와의 회동을 준비하게 되었다.⁶⁰⁾

청진(淸津)주재 러시아 영사이자 육군성의 정보장교였던 비류코프(Н.Н.Бирюков)⁶¹⁾가 연흥

55) РГИА.Ф.560.Оп.28.Д.421.Л.3-Зоб.: Копия 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ы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11 октября 1909 г.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대련주재 러시아영사,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그리고 연흥룡강주 총독에게 통보(10.11.)했다.

56) Там же. 16-17об. Письмо Виленкина Коковцову 3 октября 1909 г. 빌렌킨의 보고서에는 이토를 수행할 인사들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었다. 수행원은 9명이었으나 모두 동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나카무라(中村是公) 滿鐵 의장, 2) 무로타(室田義文), 이토의 친구이자 전 멕시코대사 3) 오우치, 관동총독부 외무처장 4) 후루야(古谷久綱), 이토의 개인비서 겸 황실 의전국장, 이토의 오른팔이자 무로타의 사위 5) 테이, 외무성 관리, 중국통이자 만주와 청국관계 전문가 6) 마츠키, 참모부 소령으로 러일전쟁사 전문가이자 이토에게 만주의 군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장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임명 7) 타츠이-남만주철도 총비서 8) 모리, 황실장관의 개인 비서이자 일본 현대사의 대가이자 이토의 친구의 자격으로 동행 9) 고야마, 황실청 산하의 의사.

57) Там же. Л.19. Телеграмма тайного советника Вебе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ября 1909 г. “Такая встреча на нейтральной почв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на.”

58) Там же. Л.21. Телеграмма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ября 1909 г. 운테르베르게르는 이토가 하얼빈 회동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귀국하는 일정을 통보받고 코코프초프에게 하바롭스크를 거쳐 그곳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함께 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토가 먼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한 후, 현지에 도착하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시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59) Там же. Л.27.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Унтербергеру, 11 октября 1909 г. из Харбина.

60) РГИА.Ф.560.Оп.28.Д.418.Л.56.: Программа.

룡강 군관구 참모본부에 보고한 문서에서 안중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던 한인신문 대동공보의 편집실에서 기거하던 안중근이 우덕순, 조도순과 함께 하얼빈으로 출발한 날짜는 1909년 10월 21일이었다. 둘째, 이들의 거사자금은 1909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온 정재관이 제공하였다.⁶²⁾

또한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관련 러시아 언론 기사자료에서 발췌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관련 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된다. 첫째, 채가구역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조도선, 우덕순)이 “장군 휘하의 26명이 만주로 특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채가구역에서 체포된 한국인에게서 압수한 권총에는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파열탄(Exploding bullet)이 장전되어 있었다. 셋째, 일본당국은 이토의 뒤를 바짝 쫓아갔던 별도의 그룹이 있었고 이들은 현재 한국으로 되돌아갔으나, 증기선을 보유하고 있고 남만철도와 대련에 다수의 협력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넷째, 안중근에게서 압수한 문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주모자들은 한국에 있으며 이토의 저격은 총궐기의 신호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⁶³⁾

코코프초프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직후(1909.10.26.) 곧 바로 사고수습에 나섰다. 그가 최우선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문제는 책임 소재였다. 러시아 조차지 하얼빈에서 발생한 한국인이 일본이 정치가를 저격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핵심은 러시아측의 경호 소홀인지 아니면 입장객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책임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관건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경호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여 외무부상 사조노프에게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 철도당국이 환영객에 대한 예비검속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그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환영객들은 특별한 이름표를 가지고 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동청철도 운영진은 이들간 일본총영사에게 일본국적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보내야하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영사는 어떤 표도 없이 자유롭게 일본인들의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격범의 외관은 전형적인 일본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일본인들 사이에 있었다. 일본인들도 그를 조금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일본총영사가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일본영사관 서기가 나에게 확인해주었다.”⁶⁴⁾요컨대 코코프초프는 입장객 단속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일본영사관에 있음을 분명히 했

61) РГВИА. Ф.2000. Оп.1. Д.4107. Л.101.: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Будберга в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25 января 1910 г. 비류코프는 서울의 관립아어(俄語)학교 제자이자 러시아유학생 출신의 한국인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중이던 연흥룡강 군관구 정보장교 앙켈(Энкель)과 부드베르그(Будберг) 중령과 협업관계에 있었다.

62) Там же. Л.99-100.: Секретный рапорт Штаба Приаму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11 ноября 1909 г.

63) РГИА.Ф.560.Оп.28.Д.420.Л.7-8.:Подробности Ареста Корейских Террористов. 러시아국립 역사문서관(РГИА)의 문서군(фонд) 560, 목록(опись) 28번에는 “코코프초프의 동청철도 및 극동주요 중심지 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무비서 코코프초프의 여행(О поездке статского секретаря Ковцо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 целью посещения территории КВЖД и важнейших центров русской окраины)”이라는 제목의 5개 문서철(ф. 416, 417, 418, 419, 420)이 있다. 그중 420번은 제호를 표시하지 않은 신문에서 재무상의 극동시찰 일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발췌하여 긴급하게 정리한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따라서 발췌 신문의 제호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64) РГИА.Ф.560.Оп.28.Д.421.Л.38-38об.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의 기밀서신[1909.10.14(27)]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에서는 하얼빈역에 군중들의 입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유럽과 중국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나 일본인들은 일본영사의 희망에 따라 제한 없이 입장시켰다. 코로스토베츠는 이러한 경솔한 판단이 군중속에서 안중근에 대해 주의하지 못한 원인으로 진단했다.(АВПРИ.Ф.150.Оп.493. Д.1279.Л.44-47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Коростовцаб 14 октября 1909 г.)

다.

코코프초프가 책임소재 파악과 더불어 사태수습을 위해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문제는 하얼빈 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 및 일본정부의 평가였다. 하얼빈 의거는 요인 경호와 관련하여 일본인 환영객들에게 비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일본총영사관의 책임도 있었지만,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결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청철도 수비대장 호르바트(Д.Л. Хорват)장군과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И.Я. Коростовец)가 이토의 사체 실은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할 만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사태를 수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⁶⁵⁾ 따라서 러시아 재무상은 전쟁과 혁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재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에 대한 처분권을 일본측에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여론을 의식한 고육책이었다. 그는 저격범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한국의 사법권은 일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은 일본영사관에 이관될 것임을 외무성에 통보했다. 이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제2차 러일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고려해야했기 때문이었다.⁶⁶⁾ 아울러 이토 저격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러일간의 갈등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 있었다.

또한 코코프초프는 재재구 역에서 러시아 헌병에 의한 조도선과 우덕순의 체포를 이토 저격을 사전에 방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로 간주했다.⁶⁷⁾ 그 근거는 첫째, 이들로부터 압수한 리벌버 권총의 탄알이 안중근의 것과 동일한 탄두가 갈라진 파열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범관계에 있었고 둘째,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까지 단독으로 이동하여 역사에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는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우리가 경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거나 사전예방조치의 미흡함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저격사건은 운명적인 우연이었다.”고 평가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코코프초프가 이토의 장례식 참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토의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하고 돌아온 코로스토베츠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주청러시아공사는 이토가 노구를 이끌고 만주까지 찾아왔음에도 “우리 땅”, 즉 러시아 조차지인 하얼빈에서 처단한 일은 러일관계 악화요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얼빈의거가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적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에게 이토의 피격에 대한 러시아의 동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적절한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고위인사의 조문사절 파견이었다. 따라서 코로스토베츠에 의해 코코프

65) АВПРИ.Ф.150.Оп.493.Д.1279.Л.44-47об.

66) РГИА.Ф.560.Оп.28.Д.421.Л.6-6об.: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Сближение.

67)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 카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 스스로도 이토 환영식을 위해 일본인들에게 자유통행권을 발급사실은 영사관이 강력히 요구했던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10월 9일 아침 요청이 제기되었는데 사전방지책과 관련하여 나의 도착에 대해 표를 가지고 기차역을 출입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총영사는 이토의 도착시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지말도록 부탁했다. 검사가 총영사에게 한국인들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염두에 두지 못했는지 질문하자 그는 그런 위협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관구검사 밀레르는 하얼빈 역에는 이토뿐만 아니라 러시아 재무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일본측이 환영식을 조직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РГИА.Ф.560.Оп.28.Д.422.Л.41-45.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Суда Миллера Господину Прокурору Иркутской Судебной Палаты, 14 октября 1909 г.

초프가 천거된 이유는 그가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었다.⁶⁸⁾

코코프초프의 대일조문 계획이 재고된 것은 일본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시급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⁶⁹⁾ 일본정부는 이토의 피격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과격한 대응보다는 당초 기대했던 러일관계강화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주일대사와 상무관 벨린킨이 고토 신페이로부터 받은 전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어떠한 유감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언론 역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고토는 이토 피격사건이 향후 러일간의 관계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문을 보내오으로써 양국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가 계획된 여정에 따라 극동시찰을 속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에 조문특사로 방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10.28.)했기 때문이었다.⁷⁰⁾

코코프초프가 러일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분쟁재발 방지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내부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코프초프는 외무성에 국경관구(管區)법원 검사의 동의를 받고 안중근을 일본측에 넘겼다고 통보했지만,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러시아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음모에 의한 사건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수사 인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만주를 관통하는 철도부설을 위하여 청국으로부터 조차한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개입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혼선의 연속이었다. 한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일본에 있었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하얼빈에서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은 러시아에 있기 때문이었다.⁷¹⁾

안중근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안중근과 그 동지들이 러시아인들의 살상을 회피하기 위해 파열탄을 장전하여 이토를 저격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일본에 이관하는 계기가 되었던 점은 주목할만하다. 관구검사 밀레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총알이 관통하여 인접한 인물에게 총상을 입히지 않기 위하여 파열탄을 사용하였지만, 러시아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게 됨으로써 러시아 측에서 피의자를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⁷²⁾ 따라서 안중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수사를 위해 증거품들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러시아 사법부가 담당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68) АВПРИ.Ф.150.Оп.493.Д.1279.Л.44-47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Д.С.С. Коростовца. 코로스토베츠는 코코프초프의 조문이 러시아의 만주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러일관계에 어떠한 냉각도 없을 것이라는 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9) РГИА.Ф.560.Оп.28.Д.421.Л.142.: Телеграмма Коковцова Веберу, 15 октября 1909 г.

70) Там же. Л.124. Копия письм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сула в Харбине на имя Российского Генерал Консула 14 октября 1909 г. 하얼빈주재 미국영사(Garden Paddock)가 이토의 사망에 대한 애도보다는 코코프초프가 무사한 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하얼빈주재 러시아총영사에게 보낸 것은 만주문제를 둘러싼 미러일 3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편지는 “코코프초프와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어제 비극적 사건에서 무사한 것에 진정한 기쁨을 표하고자 하며 그러한 위험한 곳에 있던 그들이 천우신조(providential)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경축”하였다.

71) РГИА.Ф.560.Оп.28.Д.422.Л.23-23об. Записка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Б/Д.

72) РГИА.Ф.560.Оп.28.Д.422.Л.41-45. Прокурора Пограничного Округа Суда Миллера Господину Прокурору Иркутской Судебной Палаты.14 октября 1909 г. 관구법원 검사 밀레르가 이르쿠츠크 법원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총을 쏠 때 파열탄이 부상자 몸 안에 박히게 되며, 파열탄이 아니었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토는 관통상만 당하고 옆에 걸어가던 재무상 코코프체프가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협력의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러일관계를 고려한 러시아측의 고육책이었다. 실제적인 경찰력을 보유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러시아 당국임에도 하얼빈의거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품을 찾고 조사자료를 일본에 넘기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일본에 협조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하얼빈의 러시아 공권력이 러일 공조체제를 꾸려 하얼빈 의거 이후 사건수사를 진행시켰던 것이다.⁷³⁾

러시아의 동청철도 당국이 신문 『하르빈(Харбин)』에 게재된 이토의 사살을 축하하는 기사를 실은 편집장을 제재한 것은 하얼빈 의거가 러일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⁷⁴⁾ 동시에 이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러일 공조체제의 작동을 알리고 있었다. 이 공조체제는 의거 다음날부터 하얼빈과 이르쿠츠크에서 실시된 사건조사와 그 압수수색 결과물들을 일본 여순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에게 넘겨주었던 1909년 11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⁷⁵⁾

2) 육군상의 한러정보협력 구상과 좌절

코코프초프는 극동시찰을 마치고 차르가 머물고 있던 리바디아궁을 방문(1909.11.30.) 시찰 보고서를 상주하였다.⁷⁶⁾ 그의 상주서는 다음의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동청철도의 현황과 철도수비대 상황에 대한 보고와 둘째,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무역항 지정 폐지가 극동의 경제에 끼친 영향 분석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위상황 시찰관련 보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주서의 특징은 철도와 국방 전문가로서의 견해보다는 재무상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소의 재정지출을 통해 러일전쟁 이후 극동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코코프초프가 밝힌 동청철도회사에 대한 재정원칙은 독립채산제의 구현이었다. 이는 만주를 관통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동청철도와 같이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러시아국고에서

73) РГИА.Ф.560.Оп.28.Д.422.Л.23-23об. Ход События,относящихся к убийству Князя Ито после 14 октября 1909 года. 하얼빈의거 이후 러시아당국이 수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9일 이르쿠츠크 헌병대에서 이르쿠츠크 지역을 수색한 결과에 대한 전보를 보내왔다. 하얼빈의 요청으로 이르쿠츠크에 거주하는 조도선의 애인 보자예바 (VOZAEVA: 조선족, 이르쿠츠크 조선족 거주구역 거주)의 집을 수색 중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편지들을 다량 발견함으로써, 이르쿠츠크 한인 거주지와 하얼빈 한인 거주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색 결과, 보자예바와 거주지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을 했을지라도, 이는 러시아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수색을 종료했으며 일본에게도 통보할 필요도 없다고 결정되었다. 또한 이르쿠츠크 헌병대의 보고에 의거, 10월 30일 하얼빈의 한인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러시아경찰의 참관하에 일본당국이 수색을 담당했다. 하얼빈 한인회장 김티혼(Ким Тихон)의 집에서 안중근이 의거 전날 묵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김티혼이 저격을 준비했다거나, 의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났다. 그러나 한인 9명이 체포되어 일본측에 넘겨졌다.

74) Там же. 기사내용은 이토 사살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기사 자체로는 형법상의 저축을 받지 않지만 신문편집인은 동청철도 관리부에 의해서 체포되고 1개월간 구금되었다. 근거는 범법행위 찬양을 금지하는 동청철도 관리국 규정 위반이었다.

75) Там же. 러시아측의 수사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밀레르 검사를 만난 사람은 여순 지방법원의 미조부치 검찰관이었다. 11월 1일 군복을 입은 미조부치와 2시간 30분간의 대화 후, 미조부치는 밀레르 검사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밀레르가 그 살인사건을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줄 것과 둘째, 하얼빈역의 평면도와, 당시의 인원배치상황 및 안중근과 가와카미 총영사 그리고 코코프초프 재무상의 위치를 알려줄 셋째, 이토가 의장대를 돌아서기 전 밀레르 검사와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으므로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했다. 그 결과 밀레르는 11월 3일 관련 자료들을 미조부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76) РГИА.Ф.560.Оп.28.Д.422.Л.1-42.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재정지출을 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이었다. 그 논거는 러일전쟁 이후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나가는 형편에서 외국에서 운영중인 회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 회사가 러시아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29,000명의 자아무르 군관구 소속의 철도수비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청철도가 독자생존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코코프초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경수비대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동청철도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책은 바로 남만주철도와 호혜적인 협약체결이었다. 여순에서 하얼빈 이남의 채재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남만주철도를 하얼빈과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의 동청철도와 일본의 남만주철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동청철도 회사 비용으로 하얼빈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한다는 규제를 철폐하여 이 회사를 자율적인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⁷⁷⁾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의 원인이 되었던 국방력증강 문제 역시 재무상은 예산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극동지역의 방위 문제를 러일전쟁에 대한 기억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해법 역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요새강화작업과 같은 극동의 국방력증가 문제는 현지 사회여론에 병적으로 긴장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진단했다. 그 원인은 일본이 청국과 체결한 “만주와 간도 관련 청일협약(1909.9.4.)”에 따라 길림과 회령을 잇는吉甯철도 부설권을 획득함으로써 동청철도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길회철도 부설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배후에서 공략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이러한 사회여론은 올바른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불안심리가 안보요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코프초프는 러일전쟁 이후 극동에서 요구하는 국방력 증강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그 해법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군비증강보다는 지역여론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그는 변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른 생각을 주입해야한다는 판단을 한바, 현지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분이 생기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와 마찬가지로 극동의 방위력증강 문제 역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바로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에 있다는 생각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⁷⁸⁾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 육군상 수호믈리노프가 연해주 방위를 위해 한국의 의병들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극동방위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사업을 위한 예산획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상주서가 예산절감을 주장하는 재무성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육군성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1910년 5월 24일 각료회의 의장이자 내무상이었던 스톨리핀(П.А.Столыпин)에게 보

77) Там же. Л.5-5об.코코프초프는 하얼빈의 공공기관 운영비를 현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8) РГИА.Ф.560.Оп.28.Д.422.Л.1-42.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코코프초프가 황제 니콜라이 II세에게 자신과 육군상은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상주한 근거는 한정된 예산과 국방비 증액 요구간의 불균형이었다. 비록 재무성이 러시아함대의 부활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건함계획 예산의 최대치를 승인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재무상은 태평양의 유일한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요새화 하는 사업을 최우선의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일반적인 건함 및 요새구축 공사로부터 분리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낸 기밀서신에서 육군상은 일본의 대륙침략 기도는 명확하고 러시아에 적대적인 청국과 일본의 관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극동에서 가장 위협적인 일본 및 청국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⁷⁹⁾

육군상이 제시한 가장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은 한국의 정황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수호믈리노프는 한국의 정황을 이용해야할 이점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평시의 경우, 일본은 의병 진압을 위해 병력과 자원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는 의병들은 주한일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과 러시아에서 방첩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시의 경우, 일본군의 배후인 한국에서 거국적인 봉기를 일으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육군상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가방위의 목적에서 한국을 이용하는 문제를 스톨리핀에게 제기했다.

육군상이 국방책임자로서 노령지역 한인들을 연해주 방위에 활용하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것이 한인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었다. 수호믈리노프가 각료회의 의장에게 연흥룡강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가 우수리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특히 러시아에 충성스러운 고위급 정치적 망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는 훈령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 육군상이 연해주 거주 한국인 정치 망명자들의 항일독립운동에 주목하여 이들을 국가방위에 활용하고자 했던 근거는 육군참모본부에서 입수한 연해주정보장교 앵겔 중령의 보고서였다.⁸⁰⁾ 수호믈리노프가 논리정연하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스톨리핀에 보낸 기밀서신에 동봉됨으로써 연해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을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에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앵겔 중령의 보고서는 2년간 이상설과 정재관을 필두로 노령지역 한인들로부터 일본관련 정보수집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대일정보수집 업무에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것도 이토저격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육군상의 한국의병을 러시아국방에 활용하자는 의견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스톨리핀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몽골은 러시아, 한국은 일본의 특수이해지역으로 상호인정한 제2차 러일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황인종의 유입을 방지한다는 정부결정이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농업개혁을 주도한 스톨리핀은 시베리아와 원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를 장려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⁸¹⁾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유럽중심의 4국협조체제의 틀 속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요컨대, 제정러시아를 희생시키는데 기여한 대리차관 제공국(프랑스, 영국)들은 러시아의 국방력이 유럽에 집중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결국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의 방위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1911년 봄 수호믈리노프가 극동시찰을 다녀온 후, 육군성과 재무성간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예산불용액이었다. 재무성은 최선을 다해 블라디보스토크 방위력 증강을 위해 재

79) РГИА. Ф.1276. Оп.6.1910г. Д. 514. Л.1-2: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Сухомлинова Столыпину, 11 мая 1910 г.

80) РГИ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3-6.: Копия докладной записки, полученной в Гла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81) РГИ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14-14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П.Столыпина Унтербергеру, 8 июня 1910 г.

정 지원했다는 입장이었고 육군성은 예산집행의 경직성 때문에 실제로 불용예산 소진의 곤란함을 지적했다. 이에 재무성은 육군성의 예산불용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육군성은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다른 긴급 방위 소요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98조에 의거, 결국 잔액을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러일전쟁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전반에 요구되었던 개혁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부서는 육군성이었다. 구체제에 익숙해있던 육군성은 의회의 예산심사와 예산 관련 법령 96조의 경직된 해석에 따라 국방개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⁸²⁾ 여기에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성은 예산요구액 가운데 국고에서 충당하지 못한 3년간(1908-1909) 부족분 1억 4천만 루블을 연리 5%의 국채를 발행하여 22억8천6백만 루블을 배정하였음에도 88백만 루블이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쟁점은 다시 법령 96조의 해석으로 옮겨갔다. 육군성은 96조의 본연의 목적이 불용된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방위소요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재무성은 법령 96조를 육군성이 예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고 그럴 권리도 없음을 밝혔다. 그 결과 종전 직후부터 요구되었던 극동의 방위강화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5. 결론

상술한바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의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러시아재무상 코코프초프, 일본의 정치가 이토히로부미 그리고 한국의 애국지사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조우하게 된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특징은 만주를 포함한 러시아의 극동의 전후 재건은 삼국협상 진영의 이익을 중시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선발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제국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유럽복귀와 전후재건이 절실했으며 이는 경제적, 외교적인 대러협력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러시아의 전후복구와 국방력 증강은 러시아 발트함대의 재건과 같은 유럽중심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극동의 방위수요는 무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맞물림으로써 동아시아국제관계의 격변을 초래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양탕트를 구축한 영국은 러시아를 유럽에 집중시켜 독일에 대항한 협상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적 타협(1907.7.30)과 영러협상(1907.8.31.)을 이끌었다. 이에 러시아는 극동의 안전을 우호적인 대일관계 수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반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러일협력을 중시한 차르정부의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하얼빈 의거를 단행한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이 일본에 이관되었고 하얼빈과 이르쿠츠크의 한인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러시아헌병대가 대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에 각장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배경과 원인”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배와 혁명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대리차관을 제

82) РГИА.Ф.560.Оп.28.Д.422.Л.13-32. По некоторым вопросам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го доклада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1909 года.

공반음으로서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패전의 여파는 유럽에서 동맹국 프랑스의 입지약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경우, 영국은 앙탕트를 체결한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군대를 프랑스로 파병할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 재정 지원 규모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었다. 이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받은 재원을 영불의 관심지역이 아닌 극동의 방위에 투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1906년 대러 차관의 주축은 프랑스 자금이었으나 영국이 대러차관의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독일의 방해로 이 차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정 위기에 몰린 러시아의 운명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6년 대러차관은 프랑스의 중재로 영국과 러시아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러차관은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오랜 대립을 종식시키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에 대한 영러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고 있는 종래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추진”에서는 대러차관을 성사시킨 코코프초프가 재무상에 임명되어 예산을 둘러싼 군부와의 갈등과 전후 극동방위 시설개선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상주서의 제출이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추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전후 러시아의 군사력 복원 문제의 쟁점들이 노정된 대표적 사례로서 러일전쟁 직후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화 정책을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상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후 러시아의 극동지역 방위의 취약성이 지속됨으로써 결국 차르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 원동지역에 근거를 둔 한국의 항일독립운동 역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연동하게 되었다.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B.H.Коковцов)의 극동시찰 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얼빈 회동은 예정에 없었다. 일본정부의 방일제안이 있었음에도 도쿄방문 계획은 일정에 없었다. 따라서 하얼빈에서 이토와의 회동은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 여정에 오른 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는 이토의 하얼빈 방문은 일본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상공업상의 기회균등 그리고 청국의 영토보전을 미국에 약속한 루트-다카히라 협정(1908)을 무력화하는 대신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했다.

제3장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러시아의 극동방위계획의 변화”에서는 코코프초프와 이토의 하얼빈회동을 저지시켰던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과 그것이 노령지역 한인독립운동과 극동방위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코코프초프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러시아측 대응을 지휘하면서 사건의 책임소재가 일본총영사관측에 있음을 확인하고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주청러시아공사의 건의에 따라 조문사절로서 일본방문을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얼빈과 이르쿠츠크의 한인단체에 대한 조사와 수색도 러일이 협력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 1910년 육군상 수호믈리노프가 연해주 방위를 위해 한국의 의병들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극동방위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사업을 위한 예산획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육군상의 한국의병을 러시아국방에 활용하는 의견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유럽중심의 4국(英佛露日)협조체제의 틀 속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

었다. 그 결과 종전직후부터 요구되었던 극동의 방위강화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은 제 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관련 국내기관 소장 자료 조사 현황

- 민경현 (고려대학교)

한국전쟁 연구와 자료의 현황

민경현(고대 사학과)

I 북한 자료

1. 미국

노획문서는 한국전쟁 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1차 자료이다. 1977년 비밀이 해제된 후 1979년부터 국내로 수집된 일명 구노획문서와 1990년 초 새롭게 비밀이 해제된 일명 신노획문서(선별노획문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연구 대상은 북한군 문서에 국한되었다. 방선주가 2000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일부 문서(500건)를 영인 발간하여 국내에 처음 소개한 바 있지만(‘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전 4권), 이 지원군 노획문서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2. 러시아

1) 북한 관련 자료 소장 러시아 문서보관소

А В П Р Ф 러시아연방외무부문서보관소

Ц А М О 러시아연방국방부문서보관소

Р Г А С П И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Р Г А Н И 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

Г А Р Ф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

Р Г А К 러시아국립사진영상아카이브

2)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는 구소련 공산당문서보관소이고 현재 소장은 소련 공산당 맑시즘레닌이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역사학자 소로킨(СОРОКИН Андре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이 2010년부터 맡고 있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23~1931 :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소속 V. I. 레닌 연구소 (Институт В. И. Ленина при ЦК ВКП(б))
- 1929~1931 :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소속 V. I. 레닌 연구소 당 중앙 문서보관소 (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ЦПА) Института В.И. Ленина при ЦК ВКП(б))
- 1931~1954 :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소속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 당 중앙 문서보관소에서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소속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 당 중앙문서보관소로 변경 (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Маркса, Энгельса, Ленина при ЦК ВКП(б) - КПСС)
- 1954~1956 :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소속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연구소 당 중앙문서보관소 (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Маркса, Энгельса, Ленина, Сталина при ЦК КПСС)
- 1956~1991 :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소속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당 중앙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марксизма-ленинизма при ЦК КПСС)
- 1991년 1월~1999년 3월 : 러시아 현대사 자료보관 연구센터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 1999 3월~ :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이 문서보관소는 1619년 이후 생산된 691개의 문서군과 210만 개 이상의 문서철을 소장하고 있고 그중에는 182,500여 개 사진과 1300여 개 녹음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 소장된 문서들은 크게 세 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서유럽사회정치사 관련 문서(17 ~ 20세기 초), 근현대 러시아 정치사 관련 문서(19세기말 ~ 21세기 초)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노동운동사 관련 문서(1860년대 ~ 1980년대 말)이다.

그중 한국 관련 자료는 우선 코민테른 관련 자료가 있다. 그 안에는 코민테른과 한인 단체 간 이뤄진 보고서, 지시문과 지원 등에 관련된 문서이다. 이외에도 한인의 항일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빨치산 활동과 각종 한인 공산단체의 정치 활동에 관한 문서가 있다. 북한에 관련된 문서는 해방 후 소련군의 북한 점령 및 북한 국가 건설과 한국 전쟁 자료, 그 후 북러 관계에 관한 자료가 있다.

아직 국편에 수집되지 않은 주요 폰드와 오피시 중에는 스탈린 폰드, 북한에 파견된 소련 한인 오피시, 조선 공산당 간부 인물 정보 오피시 등이 있

다.

3)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러시아 사회정치사 국립문서보관소가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반면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ЦАМО;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는 모스크바시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빠돌스키에 자리하고 있고, 이 문서보관소의 소장은 현역 육군 대령인 페르먀코프(ПЕРМЯКОВ Игорь Альбертович)이다.

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36년 7월 2일 : 소련 국방인민위원회 문서보관부 (отдел архивов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обороны Союза ССР)
- 1943년 : 국방인민위원회 역사문서보관부 (Историко-архивный отдел НКО)
- 1944년 : 국방인민위원회 붉은군대 문서보관부 (отдел архивов Красной Армии Управления делами НКО)
- 1947년 7월 21일 : 소련 무력성 문서보관소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 1950년 2월 25일 : 소련 군사성 문서보관소 (Архив Во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ССР)
- 1953년 3월 15일 : 소련 국방부문서보관소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 1975년 11월 15일 : 소련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 1992년 3월 12일 : 독립국가동맹 연합군 중앙문서보관소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Объединён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 1992년 6월 10일 : 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10년 1월 1일 : 연방예산기관 «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부대 번호 00500) (Федераль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йсковая часть № 00500)»)

이 문서보관소는 90,000개 이상의 폰드와 1,800만 개 이상의 쉘로를 소장한 러시아 최대 규모의 문서보관소이다. 이곳에 소장된 문서들은 크게 4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은 소련 육군과 해군 소속 각종 정치 기관, 콤포스물 기관 등 자료 (1941년~1991년), 소련 국방부 소속 기관들과 국방부 하위 부서의 자료, 모든 단위의 육군부대, 철도부대 등의 자료, 소련군 내의 각종 사회단체의 자료 (노조, 당 기관 등)이다.

북한 관련 자료는 우선 88특수보병여단 자료, 소일전쟁 관련 자료, 붉은군대 총정치국 자료 (소일전쟁 작전 수립 및 제25군 북한 점령 정치적 사업 지원), 제1, 2 극동전선군 자료 (소일전쟁 수행 및 북한 점령 사업 지도), 소군정 자료, 연해주 군관구, 제25군 참모부, 제25군 예하 사단 자료, 민정관리청 자료, 각급 위수사령부 자료 (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 강원; 평양을 비롯한 도시 급 위수사령부 등), 주북한 군사전문가 활동 관련 자료, 북한 경제 건설에 관한 자료, 주북한 군사고문단 활동 관련 자료, 스미르노프, 쉬띠코프, 바실리에프, 라주바예프 등 군사고문단장의 보고서, 사한 등 자료, 조선 인민군 건설에 관한 자료, 한국전쟁 준비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아직 국편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의 규모는 방대하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을 점령한 25군 예하 군단 및 사단의 폰드, 김일성 등이 근무했던 88여단 폰드, 평안북도를 제외한 5개의 도와 평양과 원산 시 위수사령부 폰드 등이 있다. 이 안에는 북한 전체 지역에서 진행된 군사, 경제, 국가 기관 건설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II. 남한 자료

1. 6·25전쟁 당시 사단급 부대 지휘관, 참모들이 전투현장에서 기록한 사료(전체 109권 10만 쪽)

- 1) 정보.작전보고(40권)
- 2) 전투상보(31권)
- 3) 전투명령(29권)
- 4) 전투일지(9권)

2. 원문

總參謀長	參謀副長	高級副官	長	起草者	年	月	日
決裁	陳廉	命	年	第	號	日	號
命 令		六	經 出	閣 下	費 下		
非常省路							
第一師戰地境內變更與配屬兵力是原							
隊別復歸字號如下							
戰地境內劃圖如下							
第一師吳山地區戰地司令官是一月二十五日二〇〇附							
至隸下部隊及管下兼英匪討伐戰州關							
第一師是第五師團長州州							
完							
附							
二							
巨							

전투명령

時 間	連番	總 數	內 容	處 置
接 受	發 送	時 間		
12.55	177		<p>이 개 호 南 下 中 央 空 港 1월 5일 6 時 現 在 漢 江 人 道 橋 附 近 州 出 沒 河 上 敵 情 是 無 空 港</p> <p>敵 情 報 告 1. 4 2 8 4 1. 4 2 0 時 現 在 仁 川 部 隊 附 近 空 港 是 我 軍 的 空 港 固 然 是 我 軍 的 空 港 2. 4 2 8 4 1. 4 1 8 時 現 在 U N 軍 及 我 軍 是 如 何 地 若 將 漢 江 河 上 漢 江 渡 河 處 嚴 禁 和 空 港 我 隊 湖 若 偵 查 也 不 能 得 到 了 結 3. 4 2 8 4 1. 4 2 1 時 2 5 分 永 登 浦 市 以 上 砲 彈 夕 鏡 落 下 了 結 果 4. 4 2 8 4 1. 4 1 8 時 2 支 隊 以 外 偵 察 結 果 是 西 方 漢 江 線 空 港 河 上 敵 情 是 無 空 港</p>	
12.55	178		<p>敵 情 報 告 永 登 浦 上 空 敵 機 來 襲 的 偵 察 結 果 1. 1 月 4 日 22 時 現 在 永 登 浦 上 空 的 敵 機 戰 斗 機 3 台 來 襲 外 部 不 能 彈 1 1 台 擊 落 下 了 結 10 分 內 機 毀 射 擊 是 不 成 功 的</p>	

連本 A.G. 印刷

備考 W~地圖記入 S~關係參謀通告 T~部隊下達 F~保管

전투일지

스니파 陵線 21 战斗 狀況 (CT31-49)

1. 概 要

據記 4285 年 10 月 15 日 0 時 20 分 을 期 하여 敵 15A45D 이 占有中인 스니파 陵線 에 對 하여 敵 2D 19R 1個 CO 가 攻 襲 을 加 하여 我 陣 岡 陣 地 占 領 狀 況 을 敵 은 我 陣 攻 襲 을 加 한 以 來 2 日 間 에 經 려 18 回 의 交 戰 經 過 에 敵 은 4285 年 10 月 26 日 24 時 30 分 完 全 引 退 되 고 스니파 陵線 戰 斗 는 終 結 되었다 此 戰 斗 에 詳 細 한 經 過 는 下 記 와 如 하 다

2. 战 斗 經 過

- 15. 10. 20 (CT 6742) 스니파 陵線 의 5 個 CO 에 我 19R 1個 CO 攻 襲 全 日 1430 我 岡 陣 地 占 領
- 15. 19 25 E 2 個 CO 及 全 日 2010 E 1 個 CO 增 強 同 營 兵 100 Yards 前 方 까지 侵 透
- 15. 23 55 我 攻 襲 15. 01 55 E 引 退
- 16. 18 10 E 1 個 CO 岡 陣 地 에 及 襲 10 分 間 交 戰 E 引 退
- 17. 04 15 E 3 個 CO 岡 陣 地 에 及 襲 1 時 間 30 分 間 交 戰 後 E 引 退
- 17. 06 30 E 1 個 CO 再 及 襲 3 時 間 45 分 間 交 戰 經 過 에 敵 引 退
- 18. 18 45 E 1 個 CO 及 襲 暫 時 間 交 戰 經 過 에 E 引 退
- 19. 19 15 E 2 個 BV 一 次 及 襲 E 은 同 營 兵 200 Yards 前 方 까지 侵 透
- 20. 00 30 까지 繼 續 交 戰 後 被 我 中 止 我 岡 陣 地 占 領 可 能 性
- 20. 02 30 同 營 兵 敵 1 個 BV 에 對 하여 我 32R 攻 襲 兩 日 0600 E 引 退 兩 日 1415 分 我 岡 陣 地 完 全 占 領
- 21. 03 00 E 2 個 P 同 營 兵 에 攻 襲 1 時 間 X E 引 退
- 21. 18 45 E 5 個 CO 岡 陣 地 에 及 襲
- 21. 20 20 E 2 個 BV 으 로 增 強 同 營 兵 에 一 次 及 襲
- 21. 22 30 까지 繼 續 激 戰 後 E 引 退
- 21. 22 40 同 敵 再 及 襲 E 岡 陣 地 占 領 可 能 性
- 21. 24 00 我 1 個 CO 及 襲 220800 까지 繼 續 X
- 22. 09 00 我 陣 地 으 로 E 岡 陣 地 引 退 可 能 性 我 占 領
- 25. 01 40 E 1 個 CO 岡 陣 地 에 及 襲 全 日 0215 E 은 3 個 CO 으 로 增 強
- 25. 09 00 同 E 은 5 個 CO 兵 力 으 로 增 強 同 營 兵 上 項 에 서 我 我 白 兵 隊 兩 日 1905 까지 繼 續 X 我 若 干 引 退
- 25. 19 05 我 岡 陣 地 上 까지 引 退 兩 日 20. 00 E 은 陣 地 經 過 經 過 經 過 兩 日 2430 同 X 은 完 全 引 退

3. 解 析

敵 은 4 日 陵線 을 占 有 中 이므로 金 化 一 帶 地 區 壓 迫 可 能 性 으 로 ROK 2D 及 US 7D 의 主 抗 抗 線 을 管 制 可 能 性 으 로 優 位 陵線 으 로 我 陣 의 攻 襲 을 受 는 以 來 入 營

정보 · 작전 보고

1) 본문(작전명령)

步兵第6師団
紅旗 砲兵 機関

原報乙号 聖魯在秋
行政指示 第5規
地圖尺規 1/50000

4285. 4. 25

本行政指示は 4285年 4月 20日 부터 4285年 5月 5日 까지 非常警戒態勢에서 戰鬥하는 事項에

1. 補給

가 第1種及 3種의 行政指示 第4號에 準하되
나 第5種

運管 部隊	支援 部隊	位 置
美 第 55 ASP. B.	第 6 師 団	高 梁 (CTS33-292) 砲 彈
師 団 彈 藥 補 給 所	敵 下 全 部 隊	本 營 (CJ 82A-601)

1. 27日 支援砲臺는 行政指示 第4號에 準하되

2. 補給水準

가 第 1, 3, 5 種의 行政指示 第4號에 準하되

나 師 団 兵 站 部 隊의 戰斗 名 兵 員의 1日 分 隊 隊에

1日 分 兵 站 部 隊의 1日 分을 前 所 確 保 하되

다 戰斗 名 兵 員의 陣 喪 一 基 本 補 給 量은 保 障 하

되

라 彈 藥 消 耗 制 限은 聖 魯 第 61號에 準하되

로 非常 警戒 期 間에 各 隊 隊 及 砲 兵 隊 隊 隊 隊에 補 給

受 領 空 車 運 利 用 하되 突 地 戰 斗에 不 必 受 于 衛 補 給 是 日 4月 27日 限 師 団 兵 站 部 隊에 後 送 完 了 하되

리 各 隊 隊 員의 補 給 受 領 空 車 運 利 用 하되 27日 까지

師 団 兵 站 部 隊 所 屬 後 送 完 了 하되

2. 後送及 醫 療

行政指示 第4號에 準하되

취급구분 군사극비
행정지시 제5호
지도대환 1/50,000

보병 제6사단
강원 김화 후동
4285. 4. 25.

이 행정지시는 4285년 4월 28일부터 4285년 5월 5일까지 비상경계 태세에 대비하는 사항임.

1. 보급

가. 제1종 및 제3종은 행정지시 제4호에 준하라.

나. 제5종

운영부대	지원부대	위치
미 제55ASP.B.	제6사단	창들(CT83.2~29.2) 포탄
사단 탄약보급소	예하 전 부대	추동(CT829~401)

1. 27F 지원 포탄은 행정지시 제4호에 준하라.

2. 보급 수준

가. 제1, 3, 5종은 행정지시 제4호에 준하라.

나. 사단 병참보장은 전투 각개 병에 1일분 연대에 1일분 병참부에 1일분을 상시 확보하라.

다. 전투 각개 병에게 탄약 1기분후대량을 보유케 하라.

라. 탄약 소모 제한은 군수(軍需) 제61호에 준하라.

마. 비상경계 기간 중 각 연대 및 포병대 수색대는 보급 수령 공차(空車)를 이용하여 실제 전투에 불필요한 예비 보급품을 4월 27일한 사단 병참중대에 후송 완료하라.

바. 각 대 폐품은 보급 수령 공차를 이용하여 27일까지 사단 폐품수집소에 후송 완료하라.

2. 후송 및 의료

행정지시 제4호에 준하라.

3. 수송

가. 사단 증보급료

화천~사방거리~후동~별우

나. 비상경계 기간 중 각 대 차량 운영을 극도로 제한하라.

일일 수색계획 요도
작지 제 호 부록
MAP 1:50,000 KOREA

보병 제 6 사 단
강원 김화 고리실
4285. 12. 10. 0800

